

자연보호와 풍경관리에 대한 법 (연방자연보호법)

한글판

2017.08

번역 고정희

자연보호와 풍경관리에 대한 법 (연방자연보호법)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Bundesnaturschutzgesetz - BNatSchG)

BNatSchG

제정일: 2009년 7월 29일

인용방법:

“연방자연보호법, 2009년 7월 29일에 제정 (연방연보. I p. 2542에 공표)하고 2017년 6월 30일 (연방연보. I p. 2193에 공표)에 제3조 개정함.

2017년 5월 29일 현재 제4조 최종 개정. (1298)

주: 2017년 6월 30일 제3조 개정안 (2193. 44번) 법조항 내용은 확인되었으나 아직 완전히 문서화되지 않았음.

각주

(+++ 2010년 3월 1일 부로 법조항 본문 검증 +++)

(+++ 제56조 3항에 따라 적용 +++)

(+++ 제15조 2항 3호¹⁾의 적용은 해상풍력에너지이용법²⁾ 제48조 8항 참조 +++)

(+++ 제15조 2항 3호의 적용은 해양시설에 관한 법³⁾ 제5조 7항 참조 +++)

본 법은 2009년 7월 29일 (2542) 연방의회에서 결의됨. 제27조 1항에 의거 2010년 3월 1일부로 효력이 발생함.

1) 일명 자연침해조정 규정

2) 독일연방법. 해상풍력에너지를 개발하고 신장하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 2016년 10월 13일 제정 공표됨. Gesetz zur Entwicklung und Förderung der Windenergie auf See (Windenergie-auf-See-Gesetz - WindSeeG). 제48조 8항에서 (해상풍력에너지시설 건설에 대한 계획승인절차 시에 연방자연보호법 제15조 2항 3호에 따른 자연침해조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함.

3) 배타적 경제수역과 공해상의 시설물 건설에 대한 법으로 조류에너지 시설과 해양조사를 위한 시설 등을 관리하기 위해 2016년 10월 13일 제정 공표됨. Seeanlagengesetz (SeeAnlG). 제5조 7항에서 “ (해양시설 건설 계획에 대한 계획승인절차 시에) 연방자연보호법 제15조 2항 3호에 따른 자연침해조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함.

목차

제1장 개요

- 제1조 자연보호와 풍경관리의 목표
- 제2조 목표 실천
- 제3조 담당기관, 과제 및 권한, 계약, 기관 간의 협업
- 제4조 공공을 위한 공간의 기능확보
- 제5조 농업, 임업, 어업
- 제6조 『자연과 풍경』⁴⁾의 관찰
- 제7조 용어정의

제2장 환경생태계획

- 제8조 일반수칙
- 제9조 환경생태계획의 과제와 내용: 법령 제정권한의 위임
- 제10조 환경생태프로그램과 환경생태계획
- 제11조 환경생태계획과 오픈스페이스⁵⁾ 계획
- 제12조 주States 경계를 초월하는 계획에서의 협업관계

제3장 『자연과 풍경』의 일반적 보호

- 제13조 일반수칙

4) 역주: 연방자연보호법에서는 “자연”과 “풍경”이라는 두 가지 용어를 묶어 하나의 개념으로 다루고 있으나 개념에 대한 정의는 피하고 있다. 본 법에서 뿐 아니라 독일의 환경보호에서 자연과 풍경은 늘 하나의 개념으로 엮어 고찰된다. 또한 “풍경보호”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서 예를 들어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매체 중 “풍경”이 독립적 보호매체로 간주되고 있으며 자연침해조정 시에도 일반 자연자원 뿐 아니라 “풍경”의 훼손을 별도로 살펴야 한다. 풍경 그 자체가 보호대상이다.

5) 역주: 녹지관리계획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이 차원의 계획에서는 녹지 뿐 아니라 도시 광장 등 건축지로 쓰이지 않는 모든 공간을 대상으로 삼는다. 즉, “건축으로부터 자유로운 모든 공간”의 이용에 대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이를 독일 환경생태학계에서 관례적으로 『오픈스페이스 계획』이라 칭하고 있으므로 그 용어를 넘겨받았다.

제14조 『자연과 풍경』에 대한 침해

제15조 원인자 보상의무, 침해의 부적정성; 법령 제정권한의 위임

제16조 보상방책의 예치

제17조 절차; 법령 제정권한의 이양

제18조 건설법과의 관계

제19조 특정한 생물종 및 자연 서식지의 훼손

제4장

『자연과 경관』의 특정한 부분 보호

1부

연결비오톱과 비오톱 네트워크;

보호된 『자연과 풍경』 구간

제20조 일반수칙

제21조 연결 비오톱과 비오톱 네트워크

제22조 보호된 『자연과 풍경』 구간에 대한 설명

제23조 자연보호지역

제24조 국립공원, 국가자연기념물

제25조 생물권 보호구역

제26조 풍경보호지역

제27조 자연공원

제28조 천연기념물

제29조 보호된 풍경구역

제30조 법정 보호 비오톱

2부

NATURA 2000 네트워크

제31조 Natura 2000 구역의 조성과 보호

제32조 보호지역

제33조 일반 보호수칙

제34조 프로젝트의 허가와 금지; 예외

제35조 유전자 변형 생물체

제36조 계획도면

제5장

야생 동식물과 서식지 및 비오톱 보호

1부

일반수칙

제37조 생물종보호의 과제

제38조 생물종, 서식지 및 비오톱보호의 일반수칙

2부

생물종 보호 일반수칙

제39조 야생에 서식하는 동식물 보호 일반수칙; 법령 제정권한의 위임

제40조 외래종, 귀화종 및 침입종

제41조 송전선과 조류보호

제42조 동물원

제43조 동물사육시설

3부

특별 종 보호

제44조 특별보호종 동식물에 대한 보호수칙

제45조 예외; 법령 제정권한의 위임

제46조 등록의무

제47조 몰수

4부

담당 기관, 동식물 관리

제48조 담당 기관

제49조 세관의 역할; 법령 제정권한의 위임

제50조 제3국⁶⁾ 반입 반출

제51조 세관에 의한 압류, 보관, 몰수

5부

정보, 접근권; 수수료, 경비

제52조 정보에 대한 권리, 접근권

제53조 수수료 및 제반 경비; 법령 제정권한의 위임

6부

위임

제54조 법령 및 행정규칙 제정권한의 위임

제55조 단체법 및 국제법 집행; 법령 제정권한의 위임

제6장

해양자연보호

제56조 효력 및 적용 범위

제57조 독일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구역 내 보호지역; 법령 제정권한의 위임

제58조 담당 기관; 수수료 및 경비; 법령 제정권한의 위임

제7장

자연과 경관 내에서의 휴양

제59조 자연풍경 이용

제60조 책임

제61조 호소, 하천변 이용제한

제62조 사유지 이용권

제8장

공인된 자연보호협회의 참여

제63조 참여권리

6) 역주: 제3국은 독일과 계약관계가 없는 국가를 칭하며 세관 관계의 경우 대외무역법 제2조 8항에 의거 유럽연합에 속하지 않는 모든 국가를 칭한다.

제64조 분쟁권 (소송권)

제9장
재산권, 예외조항

제65조 용인의 의무 Duldungspflicht

제66조 우선 매수권

제67조 예외

제68조 소유권 제한; 보상 및 배상

제10장
과태료, 범법

제69조 과태료규정

제70조 행정기관

제71조 벌칙

제71a조 벌칙

제72조 압류

제73조 세관의 권한

제11장
경과 조치

제74조 이행 및 경과 조치

제 1 장 개요

제1조 자연보호 및 풍경관리의 목표

(1) 『자연과 풍경』⁷⁾은 그들 고유의 가치로 인해 또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의 토대로서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주거지 및 비주거지에서 동일하게 아래와 같은 원칙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
2. 재생능력을 포함한 자연생태기능과 용량 및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성
3. 자연과 풍경의 다양성, 고유성 및 아름다움과 휴양가치는

영구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때 보호란 자연과 풍경의 상태를 관리,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 복원하는 것을 모두 포괄한다. (일반규정)

(2) 생물다양성을 영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위험에 처한 정도에 부합되도록 각각,

1. 야생하는 동식물의 생존 가능한 개체군 및 서식처를 보존하고 각 동식물 개체 간의 교환 및 이동, 재정착을 가능케 하며
2. 천연의 생태계, 비오톱 및 생물종의 위협을 예방하고
3. 생물군집과 비오톱의 구조적, 지역적 고유성의 대표적 분포상을 보존하여야 한다. 이때 특정한 풍경요소들은 자연적 역동성에 내맡긴다.

(3) 자연생태계기능과 용량을 영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히,

1. 생물적 특성과 기능, 물질과 에너지 대사 및 풍경의 구조를 감안하여 한 생태계의 환경범위 정의하여 이를 함께 보호해야 한다. 재생이 불가능한 자연자원은 조심스럽게 이용하고 절약해야 하며 재생이 가능한 자연자원은 그 지속성이 보장되는 한도 내에서만 이용한다.

7) 역주: 연방자연보호법에서는 “자연”과 “풍경”이라는 두 가지 용어를 묶어 하나의 개념으로 다루고 있으나 개념에 대한 정의는 피하고 있다. 본 법에서 뿐 아니라 독일의 환경보호에서 자연과 풍경은 늘 하나의 개념으로 엮어 고찰된다. 또한 “풍경보호”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서 예를 들어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매체 중 “풍경”이 독립적 보호매체로 간주되고 있으며 자연침해조정 시에도 일반 자연자원 뿐 아니라 “풍경”의 훼손을 별도로 살펴야 한다. 풍경 그 자체가 보호대상이다. 여기서 풍경은 Landschaft (란트샤프트)인데 이를 경관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관이라는 용어가 국내에서 여러 도시시설 등에도 적용되므로 오해를 피하기 위해 풍경으로 번역했다.

2. 토양⁸⁾은 생태계의 기능이 충족되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이용되지 않는 포장면적은 철거하여 토양을 복원해야 한다. 포장철거가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그대로 자연에 내맡긴다.
3. 해수, 호소 및 하천은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유지하며 자연적인 자기정화기능과 역동성을 보존한다. 특히 천연 혹은 자연에 가까운 물과 수변풍경, 물가의 저지대⁹⁾, 기타 빗물침투 및 보유저장면적¹⁰⁾이나 침수지가 이에 해당된다. 홍수방제 역시 자연스럽게 혹은 자연에 가까운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전배려원칙¹¹⁾에 입각한 지하수보호 및 강수와 우수배출량 사이의 균형관계 역시 자연보호와 풍경관리 방안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4. 대기와 기후 역시 자연보호와 풍경관리 방안을 통해 보호되어야 한다. 특히 신선한 공기 및 찬 공기 생성지, 통풍로 등 대기청정이나 기후조절을 위해 유리한 면적 보호가 이에 해당한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특히 재생에너지 이용률의 증가 역시 매우 중요하다.
5. 야생하는 동식물과 이들의 군집 및 비오톱과 서식지 역시 각각의 생태기능성의 맥락에서 보존되어야 한다.
6. 자기조절기능이 있는 생태계에 충분한 공간과 시간을 할애해 주어야 한다.

(4) 자연과 풍경의 다양성, 고유성, 아름다움 및 휴양가치를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서는 특히,

1. 자연풍경과 역사적으로 형성된 문화경관 및 이에 포함되는 문화재, 건축문화재, 토양문화재들이 변형되거나 단절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회피해야 한다.
2. 자연 풍경 속에서의 휴양이용을 위해 이에 적합한 풍경이나 면적 등은 특히 거주지나 거주지에 인근에 위치한 경우 특히 보호하는 한편 접근이 용이토록 만들어야 한다.

(5) 대규모의 단절되지 않은 풍경은 향후에도 단절되지 않도록 보존한다. 이를 위해 도시내 건축지가 이미 들어선 곳이나 녹지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 한해서 개발하여 외곽공간이 건축지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¹²⁾ 교통용지, 에너지전송시설 또는 이에 준하

8) 역주: 독일 환경계에서는 토양을 생태계의 근간이면서도 소모되는 자원이라 보기 때문에 토양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자연침해조정에서도 토양침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자세한 것은 제44조 주석 참조)

9) 역주: 독일의 지리지형적 여건으로 인해 하천변에 저지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 많다. 천변 저지대는 산이 지배적인 한국에서 보기 드문 풍경요소인데 생태적으로 물 순환 및 토양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시 여겨지고 있다.

10) 역주: 여기서 말하는 빗물침투 및 보유면적이란 우수지나 저수지가 아니라 넓은 초원이나 들판 등 지대가 낮아 빗물을 침투시키고 보유했다가 서서히 지하수로 내보내는데 적합한 곳을 말한다. 공원도 이에 속한다. 이 역시 축산업이 발달한 유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이며 논밭이 지배적인 한국의 경작유형과는 그리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11) 역주: 사전배려의 원칙이란 보호 혹은 예방과는 또 다른 개념으로 환경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것을 말하며 유럽환경보호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속한다.

12) 역주: 이를 도심개발우선의 원칙이라고 한다. 독일의 경향은 외곽지대의 개발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현 주거지내의 밀도를 높이는 원칙을 따른다.

는 시설은 풍경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디자인하고 설치해야 하며 이들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피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 지하자원채굴, 땅파기, 흙 쌓기 등 자연생태계를 훼손하고 가치 높은 풍경요소를 손상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자연과 풍경에 대한 피할 수 없는 훼손은 자연적 천이, 복원 및 자연에 가까운 조경 등 여러 적절한 방안을 도입하여 상쇄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

(6) 주거지나 주거지 근린의 오픈스페이스¹³⁾ 및 이에 속하는 요소들, 즉 공원, 대규모녹지, 녹지축, 삼림, 숲 전이지¹⁴⁾, 수목과 수목군락, 하천, 천 및 천변, 천변저지대, 호소, 자연체험공간, 원예지, 농경지 등은 모두 보존하고 충분치 않은 곳은 보완한다.

제2조 목표 구현

(1) 누구나 각자 가능한 한도 내에서 자연보호와 풍경관리의 목표를 실천하는데 이바지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과 풍경이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2) 연방과 연방주 당국은 각 부처의 과제 범위 내에서 자연보호와 풍경관리 목표를 구현을 지원해야 한다.

(3) 자연보호와 풍경관리의 목표는 필요에 따라 가능한 한도 내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이때 위의 제1조 1항에서 규정한 여러 요구조건들을 상호조율하고 일반적으로 자연과 풍경에 요구되는 다른 이해관계들과도 저울질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야 한다.¹⁵⁾

(4) 공공녹지의 유지관리 시에도 자연보호와 풍경관리의 목표가 특별히 감안되어야 한다.

(5) “Natura 2000” 지역¹⁶⁾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자연보호와 풍경관리에 이바지하려는 유럽연합의 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1972년 11월 16일에 체결된 협정¹⁷⁾을 적극 지원한다.

13) 역주: 원문에는 Freiflächen이라고 되어 있다. frei (자유로움, 프라이)과 flächen (면적, 공간, 플레헨)의 합성어로서 본래 “건축으로부터 자유로운 모든 면적 혹은 공간”을 뜻하며 도시계획 건축 조경분야에서 쓰는 전문용어이다. 즉 모든 비건축지를 말하는데 독일 학계에서 통상 오픈스페이스라고 번역하므로 이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14) 역주: 숲이 끝나고 들이나 평야. 기타 경관으로 전이되는 부분을 독일의 생태계에서는 특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 이런 구간은 구조가 다양하여 종다양성을 위해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15) 역주: 이 조항이 그 유명한 “상호조율조항”이다. 자연보호 목표 간의 상호조율뿐 아니라 자연보호와 기타 이익 사이의 저울질도 포함하고 있어 환경단체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는 조항이다.

16) 역주: Natura 2000 지역이란 “서식지 지침”과 “조류지침”의 구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써 유럽 전역에 보호서식지 네트워크를 마련한 것을 말한다. 이는 소위 말하는 자연자원총량제 (No Net less)구현의 기본적인 도구이기도 하다. 2016년 현재 유럽 전역에 모두 2700개소의 보호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유럽총면적 (해양면적 포함)의 약 18%를 차지한다.

17) 역주: 유네스코 세계 유산 협약을 말한다.

(6) 자연보호와 풍경관리의 목표를 공공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각 교육기간과 홍보기관은 자연과 풍경의 의미, 이를 이용한 경제적 행위 및 자연 보호와 풍경관리의 과제를 모든 차원에서 홍보하고 자연과 풍경에 대한 책임의식을 일깨워야 한다.

제3조 관할기관, 과제 및 권한, 계약, 기관 간의 협업

(1) 본법에 의거한 자연보호와 풍경관리 관할기관은

1. 각 연방주법에서 규정하는 자연보호와 풍경관리 관할관청이거나 혹은
2. 본법에 의거한 연방자연보호청¹⁸⁾이다.

(2) 자연보호와 풍경관리를 관할하는 관청은 본법의 조항과 본법에 의거하여 발령된 제반 법규명령¹⁹⁾들이 준수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필요한 방안을 책임 있게 개발하여 이를 구현해야 한다.

(3) 자연보호와 풍경관리의 구현방안에 대해서는 계약상의 합의를 통해 노력대비 목표달성 간의 균형을 성취할 수 있는지 우선적으로 평가한다.

(4) 관청은 풍경관리 및 조경 방안을 실행함에 있어 가능한 한도 내에서 농업, 임업에 종사하는 자들과 그들이 자연보호와 풍경관리를 목표로 구성한 조합이나 지역사회단체 혹은 이와 대등한 단체, 인증된 자연보호협회 혹은 자연공원 관리기관 등에 위탁한다. 다만 고권적 권한은 위임할 수 없다.

(5) 연방과 각 연방주의 모든 관청들은 자연보호와 풍경관리에 관련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기획할 때 별도의 기관 참여절차가 실시되지 않을 경우 관할 자연보호관청에 통보하고 이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자연보호와 풍경관리 관할 관청 역시 자연보호와 풍경관리를 위한 계획이나 실천 방안이 타 기관의 관할 범위에 저촉이 되는 경우 이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18) 역주: Bundesamt für Naturschutz (BfN) 연방소속의 관청으로 자연보호와 풍경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다. 국내 외의 자연보호와 풍경관리에 대해 연방환경부를 자문하고 자연보호프로젝트, 연구프로젝트를 지원하며 보호종의 반입반출에 대한 허가를 맡는다. 또한 IUCN 적색 목록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며 국제 생물종보호, 해양자연보호, 남극 조약 및 유전자기술 법을 실천내지는 집행하는 관청이며 연방환경부의 연구과제를 담당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19) Rechtsverordnung. 연방환경부와 같은 독일의 행정기관이 입법기관의 위임을 받아 수립하는 법규로서 국민과 정부 모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국내에는 해당하는 용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김석현 외 “주요국의 법체계 조사 및 법률정보원 활용방법, 국회도서관 2011, 101쪽에서의 분류를 참고하여 법규명령으로 번역했다.

독일에서 사용하는 정의에 따르면 Rechtsverordnung이란 “누구에게나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지시사항으로서 입법기관이 아니라 법에 의거 입법을 위임받은 행정부에서 발령한다. 법규명령은 연방법에 근거하여 연방정부, (연방대표회의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연방부처, 혹은 연방주정부에서 발령할 수 있다. 이때 권한의 내용, 목표 및 범위는 각 해당 법에서 규정해야 한다.

(6) 자연보호와 풍경관리 관할 관청은 계획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조기에 공공과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7) 각 연방주법에서 게마인데와 게마인데 연합²⁰에게 권리를 위임한 경우 본 법에 의거한 과제들은 이들의 책임이 된다.

제4조 공공시설용지의 용도보장

아래의 공간, 즉

1. 국가안보, 국제적 과제 실천이나 국방
2. 연방경찰
3. 대중교통
4. 선박운행
5. 공급시설, 폐기시설
6. 홍수방제시설
7. 통신시설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혹은 이를 위해 계획된 공간에 자연보호와 풍경관리 방안을 구현할 때는 각 공간의 용도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때도 자연보호 및 풍경관리의 목표는 감안되어야 한다.

제5조 농업, 임업, 어업

(1) 자연보호와 풍경관리에 대한 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친환경적인 농업, 임업, 수산업의 역할을 중시여기며 자연풍경이 휴양공간으로서 유지 보존해야 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 연방토지보호법 17조 2항에서 농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따라야 하며 특히 아래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오랜 경험에서 유추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20) 역주: *게마인데 Gemeinde*는 독일 행정구역 최소단위를 말한다. 다만 한국의 읍이나 동과 의미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번역하지 않고 원명을 그대로 썼다. *게마인데*를 분류하는 기준이 구역의 규모나 인구수 등에 의거하지 않고 예로부터 내려온 마을이나 시 단위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극명한 예를 든다면, 인구 수백의 작은 시골 마을도 하나의 *게마인데*이며 인구 수백만의 베를린도 시市로서 하나의 *게마인데*이다. 지방분권 개념이 매우 강한 독일에서는 원칙적으로 *게마인데*에 계획주권 외에 수많은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게마인데가 너무 작을 경우 이웃 게마인데와 함께 연합체를 형성하기도 한다. 독일 특유의 계획역류의 법칙이 이에 근거하므로 독일의 계획체계, 행정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게마인데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지역적 환경을 고려하는 경작유형을 적용하여야 하며 토양의 생산성을 지속가능하게 보존하는 농법을 적용한다.
2. 소득을 창출하려는 목적으로 농경지 본래적 자연성, 즉 토질, 수질, 동물계, 식물계를 지속가능한 범위를 넘어 필요이상 훼손해서는 안 된다.
3. 비오톱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풍경요소는 보존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도 내에서 확장해야 한다.
4. 축산업과 식물경작 사이의 비율을 균형 있게 유지하여야 하며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회피하여야 한다.
5. 토양유실의 위험이 있는 곳, 범람지, 지하수위가 높은 곳, 늪지 등에서는 땅을 갈지 못한다.
6. 비료와 농약의 투입은 각 해당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치를 지켜야 한다. 비료 투입상황은 2007년 2월 27일에 공표된 비료법규명령 제7조²¹⁾에 따라 기록해야 하며 농약투입상황은 유럽연합의 농약거래법 제67조 1항 제2문²²⁾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3) 삼림을 임업의 용도로 이용할 때는 삼림의 구조를 자연에 가깝게 전환하고 대량 벌목을 피해 지속가능성하도록 이용한다. 지역생태계에 부합되는 수준의 비율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

(4) 하천과 호소에서 어업을 행할 때 하천변과 호소변을 포함한 생태계, 자생하는 동식물의 생활공간, 서식지 등을 보존하고 보호해야 한다. 생태계에 맞지 않는 어류의 유입은 금한다. 호소를 양어장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자생하는 동물과 식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포획의 한계를 지켜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6조 자연과 풍경의 관찰

- (1) 연방과 연방주는 관찰 지역의 자연과 풍경을 관찰해야 한다. (일반수탁)
- (2) 관찰의 목적은 자연과 풍경의 상태, 변화상 및 변화의 원인과 결과를 조사하고 묘사하며 평가하는 것이다.
- (3) 관찰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괄한다.

21) 역주: 연방식량농업부에서 비료법에 근거하여 발령한 법규명령. 제7조는 비료투입규제 및 금지에 관한 조항이다.

22) 역주: Regulation (EC) No 1107/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1 October 2009 concerning the placing of plant protection products on the market. 제67조 1항 제2문은 농약투입자가 투입된 농약의 명칭, 투입량, 투입기간 투입면적 대상 식물 등에 대해 최소 삼년간 기록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1. 풍경, 비오톱 및 국제협약의 생물종 상태.
2. 천연서식지유형과 유럽공동체의 관심대상인 생물종의 보존상태. 유럽연합에서 자연적인 생물권과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해 1992년 5월 21일에 공표한 지침 92/43/EG²³⁾ (이하 서식지 지침) 부록 IVa의 목록에 명시되어 있는 동물종의 비의도적 포획이나 살상. 유럽 조류종과 이들의 서식지의 보존상태. 이때 우선순위의 천연서식지유형과 우선순위의 생물종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3. 유럽의회와 정상회의에서 해양환경의 규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령한 지침 2008/56/EC (이하 해양 전략 기본지침)의 부록 III, 표1²⁴⁾에 명시된 비오톱 유형과 기타 생물적 특성.

(4) 연방과 연방주의 관할관청은 관찰방법을 서로 맞추고 협조해야 한다.

(5) 자연과 풍경을 관찰함에 있어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연방자연보호청이 연방의 과제를 담당한다.

(6) 개인정보 보호 및 회사, 기업의 기밀유지 등에 대한 규정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7조 용어정의

(1) 본법에 적용된 용어들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1. 생물다양성
동물종과 식물종의 다양성. 이때 각 종내의 다양성 뿐 아니라 군집형태와 비오톱의 다양성도 이에 포함된다.
2. 자연생태계
토양, 물, 대기, 기후, 동물, 식물 및 이들 간의 상호관계를 말한다.
3. 휴양
자연 풍경 속에서 자연과 풍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체험 혹은 그에 부합되는 운동. 이때 자연보호와 풍경관리의 목표에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23) 역주: 소위 말하는 “서식지 지침 Habitats Directive”. 조류보호 지침과 함께 유럽연합 자연보호지침의 쌍벽을 이룬다. 이 서식지 지침에서 유럽서식지 네트워크 Natura 2000 체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다섯 개의 부록이 달려 있는데 부록 I에서는 유럽에서 공동으로 관심을 두고 보호해야 하는 231종의 서식지 유형을 분류하고 EU 코드를 주어 정의했으며 부록 II에서는 유럽공동체가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생물종 수천 종을 여러 기준에 따라 분류 명시하였다. 부록 III에서는 유럽 공동의 보호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을 설명했고 부록 IV에서는 위기종을 (IVa 동물, IVb 식물), 부록 V에서는 국가별로 이를 포획하거나 채취할 때 행정조치를 가해야 하는 생물종의 목록을 명시했다. 새로운 회원국가가 발생할 때마다 목록들이 보완 수정된다.

24) 역주: 해양 전략 기본지침 Marine Strategy Framework Directive. 부록 III은 해양환경의 특성, 이에 미치는 영향과 그 결과가 명시되어 있으며 그중 표1에서 물리적 화학적 특성, 비오톱 유형과 생물적 특성을 정의했다.

- 4. 유럽공동체의 관심대상이 되는 천연서식지유형
유럽연합의 서식지지침의 부록 I에 명시된 서식지유형
- 5. 우선순위의 천연서식지유형
유럽연합의 서식지지침의 부록 I에 명시된 서식지유형 중 (*)로 별도 표시된 것
- 6. 유럽공동체적 의미를 가지는 지역
유럽연합의 서식지 지침의 제4조 2항 3호에 등록된 지역들로서 본법의 제32조 2-4항 (보호지역)에 의거한 보호지역으로 아직 지정되지 않는 곳도 포함된다.
- 7. 유럽 조류보호지역
유럽의회와 정상회의에서 2009년 11월 30일에 발령한 지침 2009/147/EC²⁵⁾ (이하 조류지침)의 제4조 1항과 2항²⁶⁾에 근거하여 야생하는 조류들을 보존하기 위한 지역들로서 본 법의 제32조 2-4항에 의거 이미 보호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 8. Natura 2000 지역
유럽 공동체적 의미를 가지는 지역과 유럽 조류보호지역 (위의 6과 7의 지역을 합친 것)
- 9. 보존목표
유럽에서 공동체적 의미를 가지는 천연서식지유형의 현재 유리한 보존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또는 복원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서식지 지침 부록 II 또는 제4조 2항에서 말하는 서식지 유형들 혹은 조류지침의 부록 I에서 명시한 Natura 2000 지역의 서식지 보존을 말한다.
- 10. 유리한 보존상태
서식지 지침 제1조 e호²⁷⁾와 유럽의회와 정상회의에서 2004년 환경훼손을 예방 및 복구하기 위해 발령하고 2009년에 개정된 환경보상책임지침의 제2조 4목²⁸⁾에서

25) 역주: 소위 말하는 “조류지침”. 위의 “서식지 지침”과 함께 유럽 자연보호의 가장 중요한 지침을 이룬다.

26) 역주: 조류지침 제4조 1항은 부록 I에 등록된 조류종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 2항은 부록 I에 등록되지는 않았으나 각 회원국에서 중요한 조류종의 보호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침이다.

27) 역주: “천연서식지 보존상태란: 본 지침 제2조에 명시된 서식지와 그 안에서 서식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들에 미치는 영향의 총체, 즉 장기적으로 자연적 분포와 구조, 기능, 전형적 생물종의 생존에 가해지는 모든 영향의 총체이다. 이때 천연 분포지와 이들이 위치하는 환경이 영구적으로 유지되거나 확장될 수 있을 때 ”유리한 보존상태“라 일컫는다.”

28) 역주: 환경보상책임 지침 Environmental Liability Directive에서는 “보존 상태”를 매우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서식지 지침에서 정의하는 것과 같으나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므로 보다 세밀한 정의를 내렸다.

4. “보존상태”

- a) 특정한 천연서식지와 관련하여 이에 미치는 영향의 총체가 자연적 서식공간 및 그 안에서 서식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들에 작용하여 장기적으로 자연적 분포 구조, 기능이 보존되고 유럽연합의 전 영역 중 한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혹은 해당 서식공간의 자연적인 분포지역 내에서의 생존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 이를 일컬어 보존상태라 한다.
이때 특정한 천연서식공간의 보존 상태가 아래와 같을 때 ”유리한 보존상태“라 일컫는다.
 - 천연 분포지와 이들이 위치하는 환경이 영구적으로 유지되거나 확장될 수 있을 때
 - 영구적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구조와 특수한 기능들이 존재하며 향후에도 존재할 것이 예상될 때
 - 전형적인 생물종들의 보존 상태가 아래 b) 항목에 의거 유리할 때
- b) 하나의 생물종의 분포와 개체 번식이 한 회원국가의 영토 내에서 혹은 고유의 서식공간의 자연적인 분포지역 내에서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 이 영향의 총체를 일컬어 보존상태라 한다. 그 중 한 생물종의 보존상태가 아래와

정의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2) 본 법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용어가 정의가 해당된다.

1. 동물

- a) 야생하거나 포획되었거나 혹은 사육 중인 모든 동물 및 죽은 야생동물
- b) 알 (빈 것도 포함), 애벌레, 번데기 등 모든 야생동물의 변태과정
- c) 야생동물의 신체 일부로서 알아볼 수 있는 것
- d) 야생동물로부터 얻어낸 생산품으로서 인지가 가능한 것

2. 식물

- a) 모든 야생식물과 재배식물 및 죽은 야생식물
- b) 종자, 열매 및 그 외 야생식물의 생장시기에 따른 모든 변화상
- c) 야생식물의 부분으로 인지되는 것
- d) 야생식물의 산물로서 인지되는 것: 이끼와 버섯도 이에 속한다.

3. 생물종

모든 생물종, 아종 혹은 한 생물종이나 아종의 하위군집 혹은 군락. 이때 생물종의 정의는 학명을 따른다.

4. 비오톱

야생하는 동물과 식물의 군집이 모여사는 서식지

5. 서식지

야생하는 생물종이 정기적으로 찾아드는 곳

6. 개체군 個體群

생물적 지리적으로 한정된 한 생물종의 개체수

7. 자생종

야생하는 동물종과 식물종으로서 그들의 분포지 혹은 정기적인 이동경로가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같은 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 한 생물종의 개체번식데이터에 근거하여 해당 생물종이 특정한 천연서식지의 요소로서 장기적인 생존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이 생물종의 천연분포지가 축소되지 않고 있으며 미래에도 축소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때
- 서식공간의 규모가 충분히 크며 앞으로도 유지되어 해당 생물종의 장기적인 개체 생존이 보장되었다고 판단될 때.

- a) 한 국가 내에 혹은 역사적으로 이에 위치했을 때 혹은
- b) 자연스럽게 한 국가 지역 내에 분포될 때

특정한 생물종이 야생에 내맡겨지거나 혹은 사람의 영향으로 한 국가에 도입된 동식물이 이후 사람의 도움 없이 자연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살아남아 개체군을 이루었을 때 역시 자생종으로 인정된다.

8. 외래종

야생하는 동물종이나 식물종 중 해당 서식지역에서 본래 살지 않거나 혹은 출현한 지 백 년이 넘지 않았을 때.

9. 침입종

본래 자생지가 아닌 곳에 나타난 생물종이 자연스러운 생태계, 비오톱 혹은 자생하는 생물종에게 현저한 위협의 요소가 될 수 있을 때.

10. 공동체적 관심 종

서식지 지침의 부록 II, IV와 V에 명시된 동물종과 식물종

11. 우선순위 종

서식지 지침의 부록 II의 동물종과 식물종 중 (*)로 표시된 종

12. 유럽 조류종

유럽에서 자생하는 조류종으로서 유럽연합의 조류지침에 의해 보호되는 종들

13. 특별 보호종

- a) 유럽연합의 정상회의에서 야생하는 동물종과 식물종 개체의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1996년 12월 9일에 발령한 법 No 338/97²⁹⁾ (이하 종 보호법)에 명시된 종.
- b) 위의 a)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 aa) 서식지지침의 부록 IV에 등록된 동물종과 식물종
 - bb) 유럽 조류종
- c) 본 제54조 1항에 의거하여 발령된 법규명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동물종과 식물종³⁰⁾

29) 역주: Council Regulation (EC) No 338/97 of 9 December 1996 on the protection of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by regulating trade therein. 1963년 워싱턴에서 체결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을 유럽법으로 전환한 것으로서 유럽연합 고유의 양대 지침 (서식지 지침, 조류지침)의 중요한 항목들이 수렴되어 2013년 최종 개정되었다. 유럽연합의 법의 위계를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중 Regulation은 법, Directive는 지침으로 번역된다.

30) 역주: 독일연방 종 보호를 위한 법규명령 (Verordnung zum Schutz wild lebender Tier- und Pflanzenarten) 을 말함. 본법 제54조 1항은 법규명령 발령권한에 대한 조항이다. 연방환경부 (공식명칭: 독일연방 환경, 자연보호,

14. 특별 보호종 중 아래 목록에 모두 등록된 동식물종은 엄격히 보호된다.

a) 유럽 멸종위기생물거래규제법 부록 A

a) 서식지 지침의 부록 IV

a) 본법 제54조 1항에 의거하여 발령된 법령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법규명령)에

15. 사육 동물

동물 중 규제된 환경에서 태어나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태어났더라도 그 부모가 적법하게 매매된 경우

16. 재배 식물

규제된 조건 내에서 종자, 조직배양, 꺾꽂이이나 뿌리나누기 등의 방법으로 번식된 식물

17. 광고

판매, 구매 혹은 그에 준하는 행위의 의도를 밝히는 것. 이에는 광고, 선전 및 홍보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18. 거래

제삼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의 목적으로 저장, 비축하는 일체의 행위

19. 합법

해당 생물종의 보호를 위해 해당 국가, 유럽연합 및 국제협약의 규정에 공간적 시간적으로 부합되는 행위

20. 회원국

유럽연합의 회원으로 가입한 국가

21. 제3국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

(3) 본법에서 아래의 유럽법이나 지침의 부록 혹은 부록을 지목한 특정 조항을 언급하는 경우 각각 유럽관보 중 L부문에 공표된 부록들의 문구가 그대로 적용된다.

1. 종 보호법

2. 유럽연합법 No. 3254/91 (덜 사용금지법. 제69조 5항 참조)

3. 서식지지침과 조류지침

건설 및 핵안전부)는 연방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동물종과 식물종 혹은 이들의 개체군을 특별보호하기 위한 법규명령을 별도로 발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이에 대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연방에서는 1986년 생물종보호를 위한 법규명령을 발령했으며 2013년 8월 1일에 최종 개정되었다. 부록 1에 보호종 목록이 망라되어 있다.

4. 유럽연합의 어린 기각류 모피 지침 83/129/EC. 1983년 3월 28일 특정 어린 기각류의 털과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상품들을 유럽연합회원국에 수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령한 지침으로서 1983.4.9.에 유럽관보 L91, p.30에 발표되었으며 1989.6.14.에 유럽관보 L163, p. 37에 발표된 지침 89/370/EC에 따라 개정되었다.

(4) 연방환경, 자연보호, 건설 및 핵 안전부 (이하 연방환경부)는 특별히 보호된 생물종과 엄격히 보호된 생물종을 정의하고 이들이 보호되는 시점을 밝혀야 한다.

(5) 특별히 보호된 생물종이 이미 1998년 5월 8일부로 효력을 발생한 생물종 보호에 관한 법규명령에 의거하여 보호되고 있는 경우 보호가 시작되는 시점은 법규명령에 의거한다. 1998년 5월 8일부로 효력을 발생한 생물종 보호에 관한 법규명령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으로 정의된 경우 이 역시 엄격히 보호된 종으로서 같은 조건이 성립된다.

제 2 장 환경생태계획

제8조 일반규정

자연보호와 풍경관리의 목표는 환경생태계획의 근간이 되어야 하며 사전배려의 개념으로 범지역적, 혹은 지역적으로 필요한 사항과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각 방안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제9조 환경생태계획의 과제와 내용: 법규명령 제정권한

(1) 환경생태계획의 과제는 자연보호와 풍경관리의 목표를 각 계획단계와 구역별로 구체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을 정의하고 계획과 행정절차에 부합되는 실천방안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결정되는 사항들은 계획대상지의 자연과 풍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환경생태계획에서는 자연과 풍경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전략 및 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서술하고 각 방안과 전략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표현과 근거 제시³¹⁾는 본법의 10조와 11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생태프로그램, 환경생태기본계획, 환경생태계획 및 오픈스페이스계획³²⁾을 통해서 집행된다.

(3) 도면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 자연과 풍경의 현황과 기대되는 상태
2. 자연보호와 풍경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
3. 설정한 목표와 현황을 대비시켜 유추되는 갈등요소의 분석
4.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여건과 실천 전략. 구체적으로는,
 - a) 환경영향의 방지, 감소 내지는 제거 방안

31) 역주: 『표현과 근거제시 Darstellung und Begründung』는 앞의 자연과 풍경처럼 늘 함께 붙어 다니는 개념이다. ‘표현’은 도면을 말하며, ‘근거 제시’는 보고서를 일컫는다.

32) 역주: 녹지관리계획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이 차원의 계획에서는 녹지 뿐 아니라 도시 광장 등 건축지로 쓰이지 않는 모든 공간을 대상으로 삼는다. 즉, “건축으로부터 자유로운 모든 공간”의 이용에 대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이를 독일 환경생태학계에서 관례적으로 『오픈스페이스 계획』이라 칭하고 있으므로 그 용어를 넘겨받았다.

- b) 본법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한 자연과 풍경 및 비오톱, 야생하는 생물군집, 동식물 서식처의 보호방안
- c) 자연침해에 대한 보상책을 구현하거나 자연과 풍경관련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간 정의
- d) 비오톱 네트워크 및 Natura 2000 네트워크의 보호와 발전 방안
- e) 토양, 물, 대기 및 기후를 보호, 재생 및 수준향상 방안
- f) 자연과 풍경의 다양성, 고유성과 아름다움의 유지 및 발전방안
- g) 건축지 및 비건축지의 외부공간의 유지 및 발전방안

환경생태계획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공간계획이나 건설계획에서 넘겨받아 적용할 수 있도록 표현 방식을 맞추어야 한다. 연방환경부는 법규명령을 제정하여 도면작성의 방법, 표현방식과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

(4) 환경생태계획은 위의 4. a)~g)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될 수 있다. 특히 계획대상지 내의 자연과 풍경의 현황이 변하거나 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정된 공간이나 주제에 대해서는 부분계획의 형태로 수립이 가능하다.

(5) 모든 계획이나 행정절차에는 환경생태계획의 내용을 감안해야 한다. 특히 환경생태계획의 내용이 환경영향에 대한 판단과 본법 34조³³⁾에 의거하여 적합성을 판단할 때 참조하여야 한다. 또한 수자원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 45h조와 82조³⁴⁾에 의거하여 실천방안이나 정책을 수립할 때도 감안하여야 한다. 이 때 환경생태계획의 내용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을 시에는 그 사실을 서술하고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제10조 환경생태프로그램과 환경생태계획

(1) 한 연방주 전체의 환경과 자연보호와 풍경관리에 대한 구체적 목표설정, 요구사항 및 실천전략은 환경생태프로그램에서, 현이나 군단위의 경우 환경생태기본계획에서 묘사한다. 이때 공간계획의 목표와 기본원칙 및 기타 요구조건을 함께 감안해야 한다.

(2) 연방주단위로 환경생태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다.³⁵⁾ 군이나 현단위로 수립하는 환경생태기본계획은 환경생태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포괄적이지 않을 때 수립해야 한다.

33) 역주: 허용된 프로젝트와 금지 프로젝트

34) 역주: Wasserhaushaltsgesetz. 제45h조와 제82조는 해양과 하천 및 호소 보호에 관련한 전략프로그램에 대한 규정이다.

35) 역주: 수립의 의무는 없음.

(3) 공간계획을 수립할 때 자연보호와 풍경관리의 목표, 요구되는 사항과 실천전략 중 저촉되는 사항은 연방공간계획법 제7조 2항³⁶⁾에 의거 상호 조절 절차를 통해 감안해야 한다.

(4) 환경생태프로그램, 환경생태기본계획과 환경생태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관할권의 정의 및 공간계획과의 연동성 등은 각 연방주의 법³⁷⁾에 따른다.

제11조 환경생태계획과 오픈스페이스 계획

(1) *게마인데* (지역사회) 단위로는 환경생태계획을 수립하며 구역별로는 오픈스페이스계획을 수립하여 조정한다. 이때 대단위의 환경생태기본계획을 토대로 삼아야 한다. 공간계획에서 수립한 목표와 기본 원칙들은 존중해 주어야 한다.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본법의 9조 3항에서 명시한 내용을 감안하되, 각 연방주에서 환경생태계획과 환경생태실시계획에 대해 별도로 제정한 법이 존재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2) 환경생태계획은 본법 9조 3항 1단락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구사항이나 실천전략이라는 관점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립해야 한다. 특히 계획대상지의 자연과 풍경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수립해야 한다. 오픈스페이스계획은 수립할 수 있다.³⁸⁾

(3) 환경생태계획에서 설정된 요구사항이나 실천전략들은 건설법전 1조 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간계획이나 건설계획을 수립할 때 감안해야 한다. 환경생태계획의 내용이 감안되었을 때는 이를 별도로 명시하며 건설법전 5조와 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제시 혹은 확정³⁹⁾의 두 유형 중 하나의 방식으로 건설계획에 수용되어야 한다.

(4) 베를린, 브레멘과 함부르크 주는 환경생태프로그램 혹은 환경생태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이는 환경생태계획을 대신한다.⁴⁰⁾

36) Raumordnungsgesetz (ROG). 제7조 2항에서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이해관계를 상호 조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상호 조절의 결과 공익과 개인의 이해관계가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독일의 계획절차에서 상호 조절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환경생태계획 역시 공익에 속하는 것이므로 감안되어야 한다.

37) 독일 연방 16개 주 모두가 별도의 자연보호법을 제정하여 연방자연보호법을 각 주의 현황에 부합되게 수렴하고 있다.

38) 오픈스페이스계획은 사전에 미리 수립하는 “준비형” 계획이 아니라 건설계획 중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때 이와 병행하여 수립하는 것이 통례이다. 최근에는 오픈스페이스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 차원에서 자 연침해조정을 실시하는 추세로 변화해 가고 있다.

39) 계획에서 설정된 내용은 『제시(Darstellung)』와 『확정(Festssetzung)』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계획에서 **확정**된 내용은 후에 조례가 되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제시는 제안사항이거나 아니면 기정사실을 다만 표현해주는 경우이며 구속력이 없다.

40) 베를린, 브레멘과 함부르크는 주시州로서 동시에 하나의 게마인데를 이루기 때문에 환경생태계획의 위계를 모두 따르지 않고 세 개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

(5) 환경생태계획과 오픈스페이스 계획의 수립절차와 관할 관청의 지정 등의 사항은 각 연방주의 법에 따른다.

제12조 연방주 간의 협업

본법 10조와 11조에 의거하여 환경생태프로그램이나 계획을 수립할 때 이웃 주와의 경계에 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하여 내용을 맞추어야 한다.

제 3 장 자연과 풍경 보호 일반규정

제13조 일반규정

환경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은 원인자가 미리 피해야 한다. 피할 수 없는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상쇄, 대체방안을 실현하되 상쇄나 대체⁴¹⁾가 불가능한 경우 보상금을 지불한다.

제14조 『자연과 풍경』에 대한 침해

(1) 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연과 풍경의 침해란 토양이용의 유형이나 토양구조가 변하는 경우, 혹은 토양층과 연결되어 있는 지하수면의 변화를 초래하여 공간의 생태기능이 감소되거나 풍경의 아름다움이 훼손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농업, 임업과 어업/수산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 자연보호와 풍경관리의 목표를 존중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자연침해로 간주하지 않는다. 농업, 임업과 어업/수산업이 본법 5조 2~4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연방토양보호법 17조 2항⁴²⁾을 준수하는 경우, 또한 농업, 임업, 수산업의 전문분야에서 통용되는 우수한 실무원칙을 준수하는 경우 자연보호법의 목표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41) 환경영향이나 자연침해 조정은 예방, 상쇄, 대체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금전적 보상은 세 가지가 모두 불가할 때 적용하는 최후의 방법이다.

42) 연방토양보호법 제17조는 소위 말하는 “우수한 실무”에 대한 조항이다. 우수한 실무란 특히 농업, 임업 및 어업에서 동식물과 환경보호의 원칙을 나타내기 위해 쓰이는 용어로서 독일법체계에 수용된 일종의 기본전락으로 이해되어 지며 아래와 같은 구체적 의미를 포괄한다.

-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으며
- 실무경험에 의거 적절하고, 부합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으며
- 담당 기관에서 추천하고
- 전문성이 널리 알려져 있다.

연방토양보호법 제17조 2항에서는 농업에서 토양을 이용할 때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토양의 생산성과 자연자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우수한 실무”의 원칙을 다음과 따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토양 작업을 할 때에는 일기관계를 감안하여 지역에 맞는 방법으로 실행한다.
2. 토양구조를 보존하고 개선한다
3. 특히 토양유형, 토양내 습기 및 농기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토양에 가해지는 압력 등을 감안하여 토양다짐을 될수록 회피한다.
4. 지역에 맞는 경작방법을 통해, 특히 경사면 등의 지형과 지하수, 하천, 바람 및 피복현황 등을 두루 따져 토양유실을 막는다.
5. 들판이나 경작지에 존재하는 풍경적 요소 (생울타리, 수목군락 등)은 토양보호를 위해서도 중요한 요소이므로 보존되어야 한다.
6. 작물의 수확시기 등을 따져 토양의 성격에 맞는 작물을 선정, 토양 내의 생물활동을 유지하고 지원한다.
7. 특히 유기물질이 충분히 유입되도록 하거나 경작의 집중도를 감소하여 토양 내 부식질 함량을 보존한다.

(3) 농업, 임업과 어업/수산업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일시적으로 중단 혹은 축소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도 자연침해로 간주하지 않는다.

1. 관청과의 계약에 의해 사업을 중단했다가 계약이 만료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시작하는 경우
2. 환경침해에 대한 대체방안을 미리 수행하기 위해 중단했으나 대체방안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제15조 원인자 보상의무, 침해의 부적정성; 법규명령 제정권한

(1) 환경에 대한 영향이나 훼손이 예상되면 원인자는 이를 우선 회피해야 한다. 환경피해 없이도 가능한 대안이 존재하는 경우 대안을 택해야 한다. 회피가 불가능한 경우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2) 회피가 불가능한 경우 원인자는 환경영향이나 자연침해를 상쇄하거나 대체해야 한다. 상쇄방안은 영향 받거나 침해된 자연과 경관이 *같은 공간에 같은 유형으로 복구되거나 새로 조성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훼손된 생태의 기능을 같은 유형으로 복원하거나 훼손된 풍경을 같은 방법으로 재생하거나 같은 유형으로 새로 조성되었을 경우 상쇄되었다고 할 수 있다. 훼손된 생태기능과 풍경이 *같은 정도로 복원되었거나 새로 조성되었을 경우 훼손정도가 대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20조 2항 1호에서 4호에 따른 지역⁴³⁾에 대해 확정된 발전 및 복원전략, 제32조 5항⁴⁴⁾에 의거한 유지관리계획, 제34조 5항⁴⁵⁾과 제44조 5항 제3문⁴⁶⁾에 따른 실천방안 및 수자원경제법 제82조에 따른 방안들은 상쇄 및 대체방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상쇄 및 대체방안을 확정할 때에는 본법 10조와 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생태계획을 감안해야 한다.

(3) 농경지나 임업지에 위의 상쇄와 대체방안을 실시할 경우 농업구조적인 측면을 존중해 주어야 하며 특히 농업을 위해 적절한 토지는 반드시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상쇄와 대체방안 실시를 위해 요구해야 한다. 상쇄와 대체방안을 개발함에 있어, 토양이 포장된 곳에 포장을 철거하는 방법과 야생동식물의 생활공간을 서로 연결해 주는 것과, 자연풍경과 생태계를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의 적용이 가능한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4) 실시된 상쇄와 대체방안은 필요한 시간적 범위⁴⁷⁾ 내에서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43) 각종 보호지역을 말한다.
 44) Natura 2000 지역을 말한다.
 45) Natura 2000 지역의 보호방안에 대한 조항
 46) 특별 보호종과 엄격히 보호된 종에 대한 침해 상쇄방안에 대한 조항
 47) 상쇄나 대체방안의 조성이 끝나면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 역

하며 법적으로 구속해 두어야 한다.

(5) 사전회피, 적절한 상쇄와 대체방안을 구현할 수 없거나 적절한 기간 내에 상쇄 혹은 대체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침해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대상지의 자연보호와 풍경관리가 다른 모든 이해보다 우위에 설 때에도 침해사업은 승인될 수 없다.

(6) 위의 5항의 침해사업, 즉 사전회피, 상쇄, 대체방안이 불가한 사업이 부득이하게 승인되는 경우 원인자는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보상금액은 상쇄 내지는 대체방안이 실시되는 경우에 소요되는 금액 전체와 이에 필요한 토지매입비용 및 계획용역비, 기타 시설운영 및 관리비를 모두 합산하여 책정한다. 이 금액의 책정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환경에 미친 영향의 심각성,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원인자가 사업을 통해 취득할 이익금을 함께 감안하여 책정한다. 보상금은 개인 사업일 경우 해당관청에서 사업승인서류를 발급할 때 책정하며 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일 경우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책정하여야 한다. 보상금은 사업개시 이전에 지불하여야 한다. 보상금 지불기한을 부득이하게 연기해야 하는 경우 보증이 있어야 한다. 보상금은 가능한 한 침해와 훼손이 발생한 곳에 자연보호와 경관관리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상책을 실시하는 공간은 다른 규정에 의해 다른 사업이나 보상책이 이미 계획되지 않은 곳이어야 한다.

(7) 연방환경부는 연방식품농림부 및 연방에너지경제부와 합의하고 연방대표회의⁴⁸⁾의 동의를 얻어 보상방안을 규정할 수 있다. 특히,

1. 상쇄, 대체 및 보상방안의 유형, 내용 및 범위를 정의한다. 이때 토양포장제거, 야생동식물의 서식지의 연계 방안을 포함시켜야 하며 관리와 운영방안을 위해 질적 기준을 정한다.
2. 보상금의 규모와 지불방법을 규정한다.

연방환경부가 주어진 권한을 발휘하지 않는 경우 보상에 관한 규정은 본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각 연방주의 법을 따른다.

제16조 보상방안의 비촉⁴⁹⁾

시 대체방안에 포함된다.

48) 연방대표회의 Bundesrat를 국내에서 연방상원 혹은 연방참의원으로 번역된다. 그러나 선출되는 '의원'으로 구성되지 않고 각 연방주에서 파견된 대표로 구성된 독일연방의 헌법기관으로서 이들의 입법에 대한 권한이 미미하고 (기 본법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가지고 그 외의 경우에는 "동의"하는 입장) 그 대신 연방의 운영과 유럽연합의 사안을 주로 논의하는 기관이므로 의회의 일원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연방대표회의"로 번역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법규명령을 발령할 시에는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 권한은 법에서 허락하고 이에 대한 법규명령이 별도로 존재하는 한 하위 행정기관에 위임될 수 있다. (출처: <http://wirtschaftslexikon.gabler.de/Archiv/4514/rechtsverordnungen-v5.html>)

현재까지 독일연방환경부에서 발령한 법규명령은 모두 140건이다. (출처: [독일연방환경부 공식 홈페이지/법령](#))

(1) 환경과 자연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것을 미리 감안하여 사전에 실시한 자연보호 및 풍경관리 방안들이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 상쇄 및 대체방안으로 인정된다.

1. 위의 제15조 (2)항의 조건이 만족될 때
2. 법적 구속 없이 자발적으로 실시했을 때
3. 정부지원금 없이 실시했을 때
4. 본법의 제10조, 제11조에서 말하는 환경생태계획의 모든 위계에 저촉되지 않았을 때
5. 방안이 실시되기 이전의 상태가 조사되고 이를 문서로 남겼을 때.

(2) 상쇄 및 대체방안을 비축함에 있어 생태계좌, 공간풀, 혹은 이와 유사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과 사전에 실시한 상쇄 및 대체방안을 생태계좌에 이체하는 방법, 이에 대한 승인의 필요성과 거래가능성 및 제15조 4항의 책임을 제3자에게 위탁하여 사전 상쇄 및 대체방안을 실시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각 연방주법에 따른다.

제17조 절차; 법규명령 제정권한

(1) 타법에 의거하여 승인되는 침해사업이나 관에 통보해야 하는 사업, 혹은 관에서 직접 실시하는 침해사업의 경우 이를 담당하는 관청은 자연보호와 풍경관리를 담당하는 관청/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법 제15조의 규정을 집행할 때 연방법 혹은 연방주법에서 기관 참여가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자연보호 및 풍경관리 담당기관에서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2) 연방관청이 승인하거나 혹은 직접 실시하는 침해사업⁵⁰⁾이 자연보호와 풍경관리 담당 관청의 의견이 이를 반대하는 경우, 연방의 전문기관이 최상위 자연보호 및 경관관리 관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다른 참여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3) 관에서 실시하는 침해사업이 아니며 관의 승인이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은 자연보호와 풍경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절차는 문서로 신청하며 본법 제 15조의 조건이 만족되었을 경우 승인해야 한다. 자연보호와 풍경관리 부서 부서는 제15

49) 이 항목은 2009년 개정안에 새로 도입된 것으로서 자연과 환경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보상책을 만들어 '저장'해두는 것을 말함. 베를린을 비롯한 여러 주에서 십여 년 전부터 스스로 개발하여 실시했던 방법이며 이 방법이 높은 성과를 올리게 되자 법에 차용된 것임. 다만 이 항목이 오해와 비판의 여지가 없지는 않음. 관에서 마땅히 해야 하는 자연보호와 풍경관리의 프로젝트 들을 사업의 보상책으로 이용하여 사업가들을 유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50) 연방이 주관하는 사업은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고속도로 네트워크 수로네트워크 및 국방사업 등에 국한되어 있다. 이는 연방이 직접 관리하는 땅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토관리는 모두 각 연방주의 소관이다.

조 규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결정을 내리고 구현방안을 정한다.

(4) 자연침해의 원인자는 제15조에 의거한 방안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침해 장소, 유형 및 규모와 방법

2. 사전회피, 상쇄 및 대체 방안과 이 방안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면적에 대한 정보.

해당 관청은 환경영향과 침해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전문가 감정서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이 관에서 실시하는 시설계획의 일환으로 수행될 경우, 위의 1목에서 정의한 정보를 시설계획의 틀 안에서 제공하거나 환경생태관리동반계획⁵¹⁾을 수립하여 제시해야 한다.

환경생태관리동반계획에는 본법 제34조 (5)항에 따른 Natura 2000 네트워크와의 연관성에 대한 서술과 제44조 (5)항에 다른 사전 대체방안에 대한 서술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환경생태관리동반계획은 시설계획의 일부이다.

(5) 담당관청은 제15조의 방안들이 실시됨을 보장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비용 전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 보증절차는 민법 232조와 240조⁵²⁾에 의거한다.

(6) 상쇄 및 대체방안과 이에 필요한 공간들은 목록을 만들어 기록한다. (1)항과 (3)항에 따른 해당관청은 목록작성에 필요한 정보들을 각 기관으로부터 요구할 수 있다.

(7) (1)항과 (3)항의 담당관청은 사전회피책이나 상쇄 및 대체방안들과 이에 따른 운영관리방안이 실제로 구현되는지의 여부를 감시한다. 이를 위해 원인자로부터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8) 승인이나 통보 없이 이루어진 침해사업은 담당관청이 정지시킨다. 다른 방법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원래 상태의 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제19조 (4)항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9) 침해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일 년 이상 중단되는 경우 담당관청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사업이 일 년 이상 중단되는 경우 담당관청은 사업자에게 상쇄 혹은 대체방안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침해사업의 완료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 지금까지 발생한 침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51) 이 역시 환경생태계획의 범주에 포함된다. 즉, 공간계획에는 환경생태실시계획을 도로, 상하수시설, 전기 등의 시설계획에는 환경생태관리동반계획을 각각 수립해야 한다. 서로 구분하기 위해 명칭을 달리하지만 내용은 동일하다.

52) 번역 생략

(10) 침해사업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 본법 제15조 (1)~(5)항에 의해 방안을 정할 때 환경영향평가법에 부합되어야 한다.

(11) (1)~(10)항의 규정 및 보상책 목록에 대한 사항들은 각 연방주에서 법규명령을 제정하여 구체화한다. 주정부에서는 위임법을 제정하여 관청에 법규명령 제정을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건설법과의 관계

(1) 건설기본계획의 수립, 보완, 갱신 또는 폐지로 인해 또는 건설법전 제34조 (4)항 3번에 따른 조례의 수립, 보완, 갱신 내지는 폐지로 인해 자연과 풍경에 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전회피, 상쇄 및 대체 방안은 건설법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⁵³⁾

(2) 건설법전 제3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사업을 실시할 때 건설법전 제33조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수립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와 제34조에서 규정한 건축지내의 사업계획수립절차가 진행될 때에는 본법 제14조에서 17조 (자연침해조정 조항)까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건설법전 35조 (1)항 4번⁵⁴⁾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건축물들을 건립할 때에는 자연보호와 풍경관리 담당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한 달 이내에 의견을 전달하지 않을 때에는 자연보호와 경관관리의 관점에서 아무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존재하는 지역의 사업이나 계획확정절차를 거치는 계획과 건설법전 34조 (4)항 3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보호 담당관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

(4) 건설법전 제34조에 의거한 건설 사업에 대하여 (3)항에 따라 자연보호 담당관청과의 협의 절차를 밟는 중 19조 (1)항⁵⁵⁾에 따른 훼손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사실을 사업수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수행자는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은 자연보호 및 풍경관리 담당기관과의 협의 하에 [제15조](#)에 의거한, 사전회피, 상쇄 방안, 제19조 (1)항의 제1문에 의거한 대체방안의 구현가능성을 결정한다. 그 외의

53) 일반적으로는 건설기본계획 수립, 보완, 갱신 시에 자연침해조정을 실시한다. 다만 제34조는 건설기본계획이 불필요한 면적을 정의했는데 (소위 말하는 “제34조 지역”)이 경우 각 게마인데는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 자연침해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4) 보통 마을이나 도시의 외곽지대에 건설사업이 승인되려면 우선 공공의 이익이 이를 뒷받침해야 하며 진입로나 기타 공급시설을 먼저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된다. 35조 (1)항, 1~8번까지 외곽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의 유형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그 중에는 농가, 축사 등을 비롯하여 바이오에너지 생산시설, 원자력시설, 폐기물처리장, 태양에너지발전소 등 도시나 마을의 주거지 근접한 곳에 설치하기 어려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해야 하는 시설들이 이에 속한다.

55) (1) 생물종과 그들의 자연스러운 생활공간에 대한 훼손이란 그로 인해 생물종과 그들의 생활공간을 더 이상 유지하거나 보존할 수 없을 때를 말한다.

경우에는 (2)항의 제1문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19조 특정 생물종 및 천연서식지의 훼손

(1) 생물종과 그들의 자연스러운 생활공간에 대한 훼손이란 그로 인해 생물종과 그들의 생활공간을 더 이상 유지하거나 보존할 수 없을 때를 말한다. 담당관청이 본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5조 (7)항이나 제67조 (2)항에 의거하여 원인자의 행위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심사했거나 또는 심사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건설법전 제30조와 제33조에 의거한 지구단위계획이 승인된 경우 훼손이 없다고 본다.

(2) 위의 (1)항에서 말하는 생물종이란

1. 조류지침 제4조 2항 혹은 부록 I에 등록된 조류
2. 서식지 지침의 부록 II와 IV에 등록된 동물과 식물을 말한다.

(3) 위의 (1)항에서 말하는 천연서식지란

1. 조류지침 제4조 2항 혹은 부록 I에 등록된 조류들의 서식지들과 서식지 지침의 부록 II에 등록된 서식지
2. 각 지역 환경에 맞는 동식물의 서식 공간
3. 서식지 지침에 등록된 서식지 중 특히 부화지와 수면지를 말한다.

(4) 환경보상책임법⁵⁶⁾에 따라 보호된 생물종 혹은 천연서식지를 훼손한 원인자는 유럽연합의 환경보상책임지침의 부록 II 1호⁵⁷⁾에 따라 필요한 복구방안을 실시해야 한다.

(5) 위의 (1)에 의거한 환경영향이 현저한지의 여부는 환경보상책임지침의 부록 I의 기준을 참고하고 본래의 상태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 현저하지 않다고 말한다.

1. 초래된 이상 현상이 해당 서식지나 생물종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자연적인 변동의 범주에 미치지 못할 때
2. 이상 현상이 자연적 원인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혹은 해당지역의 경작으로 인해 외부적인 변화가 생기긴 했지만 서식지에 대한 기록 또는 보존목표에 대한 설명에 의거 정상적인 변화로 판단되거나 혹은 이전의 경작행위로 인해 초래된 것일 때
3. 생물종이나 서식지의 훼손상태가 단기간 내에 자연적으로 재생되어 본래 상태로 되

56) Umweltschadengesetz

57) 환경보상책임에 대한 유럽연합 지침 2004/35/EC. 부록 II 1호에서 훼손된 생물종 복구 방안을 상세히 규정했다.

돌아가거나 혹은 해당 생물종이나 서식지의 역동성에 의거 본래 상태와 같거나 혹은 개선되어질 때.

제 4 장 자연과 풍경의 특별한 구간 보호

1 부 연결비오톱과 비오톱 연계망;

제20조 일반규정

(1) 각 연방주 총면적의 최소한 십 퍼센트의 비오톱연계망을 조성하고 이들을 다시 서로 연계해야 한다.

(2) 자연과 풍경의 일부분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

1. 본법 제23조에 의거하여 자연보호지역으로
2. 본법 제24조에 의거하여 국립공원이나 국립 자연기념물로
3. 생활권보전지역
4. 본법 제26조에 의거하여 경관보호구역으로
5. 자연공원,
6. 천연기념물,
7. 보호된 풍경요소

(3) 위의 (2)항의 보호된 자연과 풍경의 구간들이 그에 부합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연결 비오톱의 일부가 된다.

제21조 연결비오톱과 비오톱 연계망

(1) 연결비오톱은 야생에서 서식하는 동물과 식물의 개체군 및 그들의 서식지, 비오톱, 집단을 영구적으로 보장하는데 기여한다. 더 나아가서 생태적 상호작용의 기능을 유지 복원 내지는 발전시키는데 기여한다. 또한 Natura 2000 지역의 네트워크를 개선하는 데

에도 이바지한다.

(2) 연결비오톱은 연방주 경계를 넘어 지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연방주들 간의 협의가 따라야 한다.

(3) 연결비오톱은 핵심면적, 연결면적 및 연결요소로 구성된다. 연결비오톱의 구성요소들은

1. 국립공원과 국립 자연기념물
2. 자연보호지역, Natura 2000 지역 및 생활권보전지역 혹은 이들 지역의 일부
3. 본 법 제30조에 의거한 법정보호비오톱
4. 국립 천연기념물, “그린벨트 (구 비무장지대)”⁵⁸⁾ 및 풍경보호지역과 자연공원의 부분구간들 등의 기타 면적과 요소들

중 (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합한 것들.

(4) 핵심면적, 연결면적 및 연결요소들은 본법 제2조 2항에서 말하는 자연과 풍경의 보호구간으로 지정하고 계획법에 의거 확정된 뒤 장기 계약이나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해 연결비오톱으로 영구적으로 확보한다.

(5) 본법 제30조 법정비오톱과는 무관하게 지표수 및 수변면적, 경사면, 저지대는 자생하는 동식물 종을 보존하기 위한 서식지와 비오톱으로 보존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은 넓은 면적에 걸쳐 연계기능을 하므로 이 기능을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6) 지역적 차원에서는 특히 농경생활에 의해 형성된 풍경요소들을 비오톱 연계망의 선적인 혹은 점적인 요소로서 보존한다. 특히 발두링의 자연올타리나 수목군락 등은 비오톱 징검다리로서 보존하고 부족한 구간은 보완해야 한다. (비오톱 연계망)

제22조 자연과 풍경의 일부구간에 대한 보호선언

(1) 자연과 풍경의 일부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때에는 이를 선언해야 한다. 이 선언을 통해 보호대상, 보호목적 및 보호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수칙, 금칙 또는 필요한 경우 관리, 발전 및 복원방안 혹은 이를 위한 재량권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58) 역주: 여기서 말하는 그린벨트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개념과 달리 고유명사로서 구 동독과 서독 간의 분단선을 일컫는다. 동서분단으로 인해 총연장 1400 킬로미터, 폭 50-200 미터의 녹지, 즉 사실상의 연결비오톱이 형성된 것을 계기로 하여 영구히 그린벨트로 남게 된다. 그 중 약 150개소의 자연보호지구가 지정되었으며 위기종 600 여종이 살고 있다. 이 그린벨트는 남으로 그리스 북으로는 러시아까지 이어지는 유럽그린벨트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보호지역은 각 보호목적에 따라 여러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이때 주변 환경도 함께 감안되어야 한다.

(2) 자연과 풍경의 일부구간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때의 형태나 절차, 형태나 절차상의 오류 및 이의 수정, 기존 보호수준의 연장 등은 각 연방주의 법을 따른다. 연방주의 경계를 넘어 함께 보호지역을 지정할 수도 있다.

(3) 보호될 자연과 풍경의 일부구간이 확정되기 전 보호목표를 해치는 변화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일 년에서 이년까지 면적을 일시적으로 확보해 둘 수 있다. 위의 (1)의 조건이 만족된다는 전제 하에 일회 혹은 이회에 걸쳐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확보된 구간에서는 선언 내용에 따라 보호구간을 훼손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나 사업이 금지된다. 적절한 조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위의 일시적 확보는 해제될 수 있다. 이때 (2)의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다.

(4) 보호된 자연과 풍경 구간은 등록되고 표시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것은 연방주에서 정한다.

(5) 국립공원 혹은 국립 자연기념물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이를 연방환경부와 연방교통 및 디지털 시설부와 협의해야 한다.

제23조 자연보호지역

(1) 자연보호지역은 법정지역으로서 그의 자연과 풍경이 총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1. 야생하는 동식물의 서식지, 비오톱 혹은 개체군과 집단의 보존, 발전 및 복원을 위해
2. 과학적, 자연사적 혹은 역사적 관점에서
3. 희귀성, 특별한 고유성 혹은 특별한 아름다움을 보호하기 위해
4. 필요한 경우이다.

(2) 자연보호지역이나 그 부분, 요소 등을 파괴, 훼손 및 변화시키거나 또는 그 밖에 영구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은 별도의 규칙을 정하여 금지시켜야 한다. 보호목표가 이를 허용하는 경우 대중의 진입을 가능케 한다.

(3) 자연보호지역에서는 수자원경제법 제 9조 2항 3목과 4목⁵⁹⁾에서 묘사하는 바와 같은

59) 역주: 수자원경제법 제 9조 2항 3목과 4목:

(2) 아래 묘사한 행위들은 수자원의 "이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

3. 천연가스, 석유, 지열 등을 채취하기 위해 암석층을 부수거나 부분적으로 굴착하는 것

이용행위를 위한 시설 설치를 금한다.

제24조 국립공원, 국립자연기념물

(1) 국립공원은 통일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법정 지역으로서

- 1. 대규모의 공간이 거의 단절되지 않은 상태이며 특별한 고유성을 띠고
- 2. 큰 부분이 자연보호지역의 조건에 부합되며
- 3. 큰 부분이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거나 매우 적게 받았거나 혹은 자연적 역동성에 내맡겨 자연의 흐름이 방해받지 않고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곳이거나 그런 장소로 손쉽게 발전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2) 국립공원에서는 가능한 한도 내에서 방해받지 않고 자연의 역동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국립공원은 보호목표에 저촉되지 않는 한 과학적 환경관찰, 자연사 교육과 대중의 자연체험에 기여해야 한다.

(3) 국립공원은 자체의 보호목표, 대규모성 및 자연보호지역의 지정 등을 감안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국립공원에서는 수자원경제법 제 9조 2항 3목과 4목에서 묘사하는 바와 같은 이용행위를 위한 시설 설치를 금한다.

(4) 국립 자연기념물은 법정 지역으로서

- 1. 과학적, 자연사적, 문화사적 혹은 역사적으로
- 2. 희귀성, 고유성 혹은 빼어난 아름다움으로 인해

뛰어난 의미를 가지는 곳이어야 한다. 국립자연기념물은 자연보호지역과 같은 방법으로 보호한다.

제25조 생물권 보전지역

(1) 생물권 보전지역은 균일하게 보호되고 발전되어야 하는 지역으로서

- 1. 대규모의 면적을 가지며 전형적인 풍경유형을 보이고
- 2. 그 지역의 대부분이 자연보호지역의 여건을 충족시키며 나머지는 풍경보호지역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4. 위의 3에서 묘사한 행위 그에 준하는 행위의 결과로 발생한 물을 지하에 저장하는 것

- 3. 동물과 식물 종 중 경제적으로 이용되었던 혹은 이용될 수 있는 종의 야생종 내지는 재래품종이 다양하며 오랜 시간에 걸쳐 전통적으로 다양하게 이용한 결과로 형성된 특유의 풍경 및 그 안에서 역사적으로 지켜져 온 생물종과 비오톱의 다양성의 유지, 발전 및 복원에 기여할 수 있으며
- 4. 자연자원을 특별히 아끼는 방향의 경제행위를 시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2) 생물권 보전지역은 보호목표가 이를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자연과 풍경의 연구와 관찰 내지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교육의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

(3) 생물권 보전지역은 대규모성을 지키며 핵심지구, 관리지구 및 발전지구 등의 유형을 두어 더욱 개선해야 하며 자연보호지역이나 풍경보호지역과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한다.

(4) 생물권 보전지역은 생물권지역 혹은 생물권 지방 등으로 불릴 수 있다.

제26조 풍경보호지역

(1) 풍경보호지역은 법정 지역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 자연과 풍경의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곳이다.

- 1. 특정 야생 동식물종의 서식지와 서식공간의 보호를 포함하여 자연생태계 혹은 자연 자원의 자연재생기능과 지속가능한 이용기능의 보존, 발전 내지는 복원을 위하여
- 2. 풍경의 다양성, 고유성 및 아름다움 혹은 특별한 문화사적 의미를 지키기 위하여 혹은
- 3. 휴양을 위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2) 풍경보호지역에서는 제5조 (1)항 및 구체적 규정에 따라 지역의 성격을 변경시키거나 특별한 보호목표에 위배되는 어떤 행위도 금한다.

제27조 자연공원

(1) 자연공원은 균일하게 발전시키고 관리해야 하는 지역으로서

- 1. 규모가 크고
- 2. 대부분 풍경보호지역 혹은 자연보호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3. 풍경조건으로 인해 휴양이용에 특히 적절한 곳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이 추구되는 곳으로
- 4. 공간이용계획에 의거 휴양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 5. 다양한 공간이용의 결과로 형성된 풍경 및 그곳에 서식하는 생물종과 비오톱의 다양성을 보존, 발전 내지는 복원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고 또한 이를 목표로 하여 친환경적인 장기적 토지이용이 가능하여
- 6. 특히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신장을 위해 적절한 곳이다.

(2) 자연공원은 위의 (1)항에서 묘사한 목표에 부합되어야 하며 자연보호와 풍경관리의 목표를 감안하여 계획, 구성되고 접근을 가능케 하며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제28조 천연기념물

(1) 천연기념물은 법적으로 지정된 단일 자연요소 혹은 오 헥타르 이하의 면적으로

- 1. 과학적, 자연사적 혹은 역사적 관점에서 혹은
 - 2. 희귀성, 고유성과 아름다움으로 인해
- 그 보호가 요구되는 것을 말한다.

(2) 천연기념물을 제거하거나 이를 파괴, 훼손 내지는 변형시킬 수 있는 일체의 행위는 구체적인 수칙을 정해 금지해야 한다.

제29조 보호된 풍경요소

(1) 보호된 풍경요소들은 법으로 지정된 자연과 풍경의 부분구간을 말하며

- 1. 생태계의 용량과 기능성을 보존 발전 혹은 복원하기 위해
 - 2. 지역과 풍경의 아름다움을 되살리고, 정리하고 관리하기 위해
 - 3.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혹은
 - 4. 특정한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로서의 의미를 지키기 위해
- 필요한 경우 지정한다.

연방주 전체 혹은 한 지역 전체에 걸쳐 등장하는 지역특유의 가로수길, 수목군락, 자연을

타리 등의 풍경요소 자체를 보호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⁶⁰⁾

(2) 보호된 풍경요소를 제거하거나 이를 파괴, 훼손 내지는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는 적절한 수칙을 정해 금지해야 한다. 해당 요소들이 감소된 경우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식하거나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3) 가로수길 보호에 대한 각 연방주 법들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30조법정 보호비오톱

(1) 특별하거나 중요한 비오톱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2) 아래에 열거하는 비오톱을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있다:

1. 자연이거나 자연의 모습에 가까운 호소와 하천, 그리고 호소변과 하천변의 자연에 가까운 식물상. 모래톱, 절강, 범람지.
2. 늪지, 습지, 갈대밭, 기타 수생식물군락, 습초지, 샘, 염암.
3. 천연의 모래언덕, 돌무더기, 점토층, 관목덤불, 건조초지, 중금속으로 오염된 땅에 자라난 식물군락, 삼림, 건조온난 기후에 형성된 덩불⁶¹⁾
4. 습지림, 저지대림, 계곡림, 알프스 하부의 낙엽송림.
5. 기암괴석, 알프스 잔디, 늘 눈이 쌓여있는 계곡 등
6. 절벽, 해안절벽, 해안모래언덕, 모래톱연못, 발트해 연안의 하천 (빙하기에 형성된), 연안습지, 염생초지, 염색식물 등 해안에 형성되는 다양한 특이비오톱

각 연방주에서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비오톱에 대해서도 역시 금지항목이 적용된다.

(3) 특별허가를 받고 훼손한 만큼 대체하는 경우 (2)항의 금지조치에서 제외된다.

(4)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 위의 비오톱이 훼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계마인데⁶²⁾에서는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며 지구단위계획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예외조항이 결정된 경우 향후 7년 이내에는 지구단위계획 대상지에서 실시되는 사업을 위해 별도의 예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60) 예를 들면 브란덴부르크 주에서는 농촌의 전형적인 유실수 가로수길을 모두 보호하고 있으며 북독의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주 등은 농경지의 구획을 가르거나 바람을 막기 위해 심어 놓은 수목군락을 그 지방의 전형적인 풍경요소로 보호하고 있다.

61) 이들은 모두 희귀비오톱으로 각별히 보호되고 있다.

62) 지구단위계획 수립권은 각 계마인데에 속해 있다.

2부 NATURA 2000 네트워크

제31조 Natura 2000 지역의 조성과 보호

연방과 연방주는 유럽연합의 생태계 네트워크 “Natura 2000” 지역을 구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서식지 지침 및 조류지침에서 요구하는 책임을 다 해야 한다.

제32조 보호지역

(1) 각 연방주는 서식지 지침 제4조 1항 및 조류지침 제4조 1항과 2항에서 명시한 지역을 지침에서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선발한다. 이때 연방환경부와 협의해야 한다. 후자는 다른 연방부서를 참여시켜야 하며 유럽위원회에 선발된 지역을 통보한다. 동시에 서식지 지침 제6조 1항에서 요구하는 책임을 다하고 농업과 임업에 미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의 규모와 어떤 방법으로 이행할 것인지도 통보해야 한다.

(2) 서식지 지침 제4조 2항 3호에 의거하여 지정된 지역은 동 지침 제4조 4항에서 요구하는 바대로, 조류지침 제4조 1항 2항에 의거하여 지정된 지역은 본법 제20조 (2)항에 따라 자연과 풍경의 보호구간 보존목표에 부합되도록 선언한다.

(3) 보호지역선언을 통해 보호목표를 정하고 그에 따라 요구되는 지역경계를 정한다. 우선순위의 천연서식지 유형이 보호대상인지 아니면 우선순위의 생물종이 보호대상인지 확실히 밝혀야 한다. 적절한 수칙과 금칙 및 관리, 발전방안을 개발하여 서식지지침 제6조의 요구사항에 부합되도록 한다. 그 밖의 여러 보호조항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4) 위의 (2)와 (3)에서 말하는 보호선언은 본법을 포함한 기타 법령이나 각 연방주의 공간이용법, 행정규정 등에 의해 공공기관이나 혹은 비영리단체 혹은 계약자에 의해 이미 동등한 보호방안이 실시되고 있는 경우 불필요해진다.

(5) Natura 2000 지역에 대한 운영관리계획은 별도로 수립되거나 혹은 다른 계획의 일부로서 수립될 수 있다.

(6) 독일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내의 위의 (1)항 제1문과 (2)항 지역을 제20조 2항에 따라 자연과 풍경 부분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선언하고자 할 때 제57조를 따른다.

제33조 일반 보호규정

(1) Natura 2000 지역의 보호목표 혹은 목적을 위해 중요한 구간에 현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변화와 장애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연보호와 풍경관리를 담당하는 관청은 제34조 3항에서 5항까지를 조건으로 하여 위의 비허용조항과 제32조 3항에 따른 금지조항에 예외를 허가할 수 있다.

(1a) Natura 2000 지역에서는 아래의 목적을 가진 시설은 설치될 수 없다.

1. 슬레이트, 점토 혹은 이회토를 채취시설 또는 천연가스를 조사하거나 얻기 위해 유압을 이용하여 탄층을 깨는 시설
2. 위의 1번 작업으로 인해 모인 물을 지하에 저장하는 시설.

이때 제34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서식지지침 제5조 1항에 의거한 지역에서는 기획에서 결정이 내려지는 기간 동안 위의 (1)항 제1문에 따라 지역 내의 우선순위 천연서식지와 우선순위의 생물종을 관리한다. 제34조와 제36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34조 프로젝트의 허가과 금지; 예외조항

(1) 모든 프로젝트는 승인 또는 집행 이전에 Natura 2000 지역의 보호목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의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이때 사업 그 자체뿐 아니라 타사업 혹은 타계획과 연계되어 지역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도 심사되어야 한다. Natura 2000 지역이 본법 20조 (2)항에서 말하는 보호지역 내에 속하고 Natura 2000을 포함한 보호목표가 충분히 감안된 경우 해당 지역의 보호목표와 보호규정이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이 된다. 사업수행자는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제반 서류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2) 평가의 결과 환경영향이 지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

(3)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1. 사회, 경제적 측면을 포함하여 모든 점에서 공공의 이익이 우위에 있다고 판단될 때,
2. 프로젝트의 목표와 부합되며 동시에 훼손을 감소할 수 있는 공간대안이 없을 때.

(4) 프로젝트 대상지에 기존하는 서식지와 생물종이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면 안보와

방어의 목적이거나 아닌 경우 환경을 위해 다른 긍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나타낸다고 판단 될 때에만 허용된다. 그 외의 경우 (3)항의 1에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을 증명하기 위해 연방환경부의 전문가회의의 감정서를 받아야 한다.

(5) 그럼에도 (3)항과 (4)항에 의거하여 프로젝트를 시행하려는 경우 Natura 2000 네트워크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방안들을 연구하여 제시해야 한다. 담당 관청은 연방환경부의 전문가회의에 그 방안을 보고해야 한다.

(6) (1)항에 의거한 프로젝트 중, 관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도 아니며 다른 어느 관청의 결정이나 통보도 필요치 않은 성격의 것이라도 자연보호와 풍경관리 담당관청에는 별도로 통보해야 한다. 자연보호와 풍경관리 담당관청은 (1)~(5)항까지의 조건이 지켜질 수 있도록 프로젝트 시행기간을 제약할 수 있다. 통보 후 한 달 내에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다. 반대로 통보도 하지 않은 채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경우 담당 관청은 이를 중지시킬 수 있다. (2)항에 의거 환경영향을 평가할 때 (3)항과 (5)항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프로젝트를 거절할 수 있다. 각 연방주에서 발령한 금지 및 예외 조항이 본법의 것보다 미약한 경우는 본법의 조항들을 적용하여야 한다.

(7) 본법 20조 (2)항의 보호지역들과 제30조의 보호 비오톱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엄격한 보호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위의 (1)항에서 (6)항까지를 적용시킨다. 다만 연방환경부의 전문가 감정서에 관한 항목은 언제나 유효하다.

(8) 위의 (1)에서 (7)까지는 계획확정절차를 대체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유효하다. 건설법전 제30조⁶³⁾에 따라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건설법전 제29조⁶⁴⁾에서 정의한 시설이나 작업을 할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법전 제33조⁶⁵⁾에 따른 계획확정절차 기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제35조 유전자 변형 생물체

1. 유전 공학법 제3조 5목⁶⁶⁾에서 말하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의도적으로 방출하거나

63) 건설법전 제30조는 지구단위계획 대상지에서의 사업 허용에 대한 규정이다.

(1) 지구단위계획의 대상지 범위 내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확정하는 건축 용도와 규모, 건폐율과 용적률, 교통면적 등에 위배되지 않고 도로설치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사업이 허용된다.

(2) 제12조에 따른 개발사업관련 지구단위계획의 대상지 범위 내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거스르지 않고 도로시설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 사업이 허용된다.

(3) 위의 (1)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 한 지구단위계획 대상지 범위 내에서의 사업의 승인 여부는 제34조 혹은 35조에 따라 결정한다.

건설법전 제34조는 주거지역 내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제35조는 주거지 외곽의 개발에 대한 규정이다.

64) 건설법전 제29조는 사업의 유형을 정의하고 법적 근거를 규정한다.

(1) 구조물의 설치, 변경 내지는 용도변경 사업과 대규모의 흙쌓기 및 채굴사업, 터파기, 적재 등에 대해서는 제30조로부터 37조가 적용된다.

65) 건설법전 제33조는 계획확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의 사업 승인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66) 유전자 공학법 제3조는 용어정의 항목으로서 5목은 “방출, 즉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환경에 의도적으로 풀어놓는

2. 농업, 임업, 어업/수산업의 이용을 위해 허가된 상품이라도 유전자 변형 생물체가 포함되어 있거나 유사한 경우에 Natura 2000 지역 내에서 적용할 때는 경제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위의 34조 (1)항과 (2)항이 적용된다.

제36조 계획

- 1. 연방고속도로법 제16조⁶⁷⁾와 연방수로법 제13조⁶⁸⁾에 따른 도로와 수로 확정 및
- 2. 관청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감안해야 할 계획들에 대해서는

위의 34조 (1)항에서 (2)항까지가 적용된다.

국토이용계획법에 제3조 1항 7호에 의거한 국토이용계획과 건설법전 제34조 4항 1호⁶⁹⁾에 따른 건설기본계획과 그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34조 (1)항 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 5 장 야생 동식물과 서식지 및 비오톱 보호

1 부 일반규정

제37조 생물종보호의 과제

(1) 본장과 제6조 3항의 규정들은 야생하는 동물종과 식물종의 보호에 기여한다. 생물종 보호는

- 1. 야생하는 동물과 식물의 종들 및 군락과 집단을 사람으로 인한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생존조건을 보장하며
- 2. 야생하는 동물종과 식물종의 서식지와 비오톱을 보호하고

행위”를 정의하고 있다.

67) 연방고속도로법 제16조는 고속도로 계획에 대한 조항으로 계획담당관청, 노선 결정 환경영향평가 등을 규정한다.

68) 연방수로로법 제13조는 연방차원의 수로계획에 대한 조항으로 계획담당관청, 노선 결정 환경영향평가 등을 규정한다.

69) 건설법전 제34조 4항 1호: “각 게마인데는 규정을 만들어 주거지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

3. 도태된 야생 동식물종을 적절한 비오톱과 자연적인 분포환경에 다시 정착시키는 것
을

모두 포괄한다.

(2) 식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전염병 법, 삼림경제법, 수렵법, 어업법의 규정은 본장의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본장을 근거로 하여 발령된 어떤 법규명령에도 구애받지 않는다. 다만 수렵법과 어업법에서 특정 생물종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발령되지 않을 경우 수렵 및 어업면허가 있는 사람들의 권리가 본장의 규정에 의해 또는 본장에 의거하여 발령된 법규명령에 구애받게 된다.

제38조 생물종, 서식지 및 비오톱 보호의 일반규정

(1) 제37조 1항에 따른 과제의 준비와 실행을 위해 자연보호와 풍경관리 담당의 연방 및 연방주의 관청들은 제6조에 따른 관찰 결과에 기초하여 보호, 관리 및 발전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천에 옮긴다.

(2) 국제법과 유럽연합법의 수렵 혹은 제54조 1항 2목에서 규정하는 생물종과 그들의 서식지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자연보호와 풍경관리를 담당하는 연방 및 연방주의 관청들은 상호 협의하여 효과적인, 예방적 차원의 보호방안을 강구하거나 아니면 종 보존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우발적인 포획 혹은 살상으로 인해 엄격히 보호된 생물종에 현저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이에 필요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3) 서식지지침 제18조 및 조류지침 제10조에 의거한 연구과제와 기술적 과제들은 지원되어야 한다.

**2부
생물종 보호 일반규정**

제39조 야생하는 동식물 보호 일반규정; 법규명령 제정권한

(1) 금지사항

- 1. 야생동물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포획하거나 상해하거나 살상하는 하는 것
- 2. 야생종 식물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취하거나 이용하거나 혹은 짓밟거나 기타

방법으로 훼손하는 행위

3. 야생하는 동물과 식물들의 서식지를 합리적 이유 없이 훼손 혹은 파괴하는 행위

(2) 수렵 및 어업법의 규정과 관련하여서도 서식지지침 부록 V에 명시된 야생 동물과 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것을 금한다. 각 연방주는 제45조 7항 혹은 서식지지침 제14조에 근거하여 위의 문장에 대해 예외를 허가할 수 있다.

(3) 위의 (1)의 2호 규정을 벗어나 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개인의 수요를 위해 야생화, 야생초, 고사리, 이끼류, 열매, 버섯, 약초 및 기타 야생식물을 소량으로 채취하는 것은 허용된다.

(4) 사유지라도 야생식물들을 사업의 목적으로 대량 채취, 가공하고자 할 때는 자연보호와 풍경관리 담당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해당 종의 채취로 인해 서식지의 균락이 위협을 받지 않거나 생태계가 현저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조심스럽게 채취한다는 것을 전제로 허가해야 한다. 지역 종 종자를 얻기 위한 채취에 대해서는 자연보호와 풍경관리의 목표에 유리한 영향을 주는지의 여부를 감안하여 허가를 결정한다.

(5) 금지사항

- 1. 초원, 들판, 나지에서 자라고 있는 피복식물 또는 경사면의 울타리 등을 태우는 행위. 혹은 농업 임업 어업의 용도지가 아닌 곳에서 동식물을 현저히 해치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행위⁷⁰⁾
- 2. 삼림 외의 땅에서 자라는 수목, 즉 수목재배원, 원예지 등에서 자라는 나무들, 관목 균락, 생울타리, 덩굴 및 기타 수목들을 3월 1일에서 9월 30일 사이에 자르는 행위⁷¹⁾. 수목관리를 위해 자르거나 전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 3. 3월 1일에서 9월 30일 사이에 갈대밭을 자르는 행위. 이 기간 내에 갈대밭은 오직 부분적으로만 잘라낼 수 있다.
- 4. 기계를 이용하여 용수로, 개천 등을 벌초하는 행위. 이를 통해 자연생태계, 특히 동물계가 크게 영향을 받을 때에 해당 된다.

1번에서 3번까지의 각 첫 문장의 금지사항은 아래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 1. 관청에서 실시하는 관리작업
- 2. 공공의 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아래와 같은 작업으로 다른 방법이나 다른 기간에는 구현이 불가능한 경우

70) 과도한 농약살포 등을 말함

71) 수목균락이나 덩굴에서 서식하고 있는 조류, 곤충류 등을 보호하기 위함.

- a) 기관에서 행하는 작업
- b) 기관에서 허용한 작업 혹은
- c) 교통안전을 위해 실시하는 작업

3. 제15조에 의거 허가된 자연과 풍경의 침해

4. 허가된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소량의 수목이 제거되어야 할 때.

각 연방주정부는 위의 금지조항 2, 3호의 첫 번째 문장에 근거하여 전 연방주 공간 내에 혹은 일부 지역에 금지기간을 규정할 수 있다. 또한 위임규정을 만들어 재량권을 다른 관청에 위임할 수 있다.

(6) 굴, 갯도, 지하실 혹은 이와 유사한 공간 중 박쥐들이 겨울나기 하는 곳은 10월 1일에서 3월 31일까지 접근이 금지된다. 불가피한 경우 박쥐의 겨울잠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며 본래 관광이용이 빈번한 곳과 사람의 통행량이 많은 곳도 제외된다.

(7) 기타 규정과 특히 4장과 5장 3부에서 규정한 내용 및 예외 규정 등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40조의래종, 귀화종 및 침입종

(1) 외래종이나 침입종에 의해 생태계나 비오톱 및 생물종의 교란이 오지 않도록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 침입종으로 의심되는 생물종은 관찰한다.

(3) 연방과 연방주들의 담당 관청은 새로 출현하는 침입종 동물이나 식물이 확인되면 즉시 제거하거나 혹은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이미 확산된 침입종에 대해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 더 이상의 확산을 막고 이로 인한 영향을 저감하되 그 방안이 효과가 있고 비용 대비 효과가 균형관계에 있다고 여겨질 때에 한한다. 첫 문장과 둘째 문장은 아래 (4)항의 3호 1목의 농업, 임업 재배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4) 외래종의 동식물을 자연에 방출할 때는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공적으로 재배한 식물 중 지역 종을 모수로 삼아 번식한 것일 경우 외래종이 아니다. 생태계나 비오톱 및 생물종의 교란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 허가의무에서 제외된 것은

- 1. 농업과 임업에서의 작물

2. 동물 이용의 경우

(a) 외래종이 아닐 때

(b) 외래종이기는 하지만 농약관리법에 의해 허가의무가 있으며 허가 시에 종 보호의 목표가 감안되었을 때

친환경적 식물관리의 목적⁷²⁾을 위해선 허가가 불필요하다.

3. 수렵법 및 어업법에 따라 외래종이 아닌 동물을 방출할 때

4. 자생지가 아닌 곳에 수목이나 종자 등을 심는 행위는 2020년 3월 1일 까지만 허용된다. 이 시기가 지나면 자연경관에는 오로지 자생지 내지는 지역 종 수목과 종자만을 적용할 수 있다.

서식지지침 제22조⁷³⁾는 본 조항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5) 위의 (4)항에 따른 허가는 아직 국내에서 출현하지 않는 종일 경우 연방 자연보호 관청에서 담당한다.

(6) 담당관청은 생태계나 비오톱 및 생물종의 교란이 의심되는 경우 허가 없이 방출한 식물 혹은 비의도적으로 자연에 분포시킨 식물 혹은 자연으로 도주한 동물 등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 송전선과 조류보호

신규 설치하는 전신주나 중전압 송전을 위한 구조물은 조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전신주나 중전압 송전을 위한 구조물들 중 조류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것들은 2012년 12월 31일까지⁷⁴⁾ 감전방지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42조 동물원

(1) 동물원은 살아있는 야생 동물을 관람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연중 최소한 철일 이상 기르는 장기적 시설을 말한다. 동물원이 아닌 것은

1. 서커스

72) 공원 잔디밭이나 초원에 제초제나 제초기를 쓰지 않고 양, 염소 등의 초식동물을 방목하여 풀을 뜯게 하는 것을 말함. 이 동물들은 외래종이어도 허가가 불필요함.

73) 지역종, 재래종과 외래종의 방출에 대한 규정.

74) 멧금류, 올빼미, 두루미 등이 감전사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고 함. 확실한 통계는 없으나 조류보호협회의 정보에 의하면 연간 수천에서 수만 마리가 죽는다고 함. 독일 전역에 걸쳐 약 350,000 구의 전신주를 개량하거나 매립해야 하는데 2017년 현재까지도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2. 애완동물 상점

3. 연방 수렵법에서 명시한 유제류 중 다섯 종 이하 혹은 야생 동물 20 두 이하를 기르는 사육장

(2) 동물원 설치, 확장, 개조 및 운영은 허가를 필요로 한다. 이때 허가는 특정 시설, 특정 운영자, 특정 동물종과 개체수 및 특정 운영방식에 관련해서만 내려진다.

(3) 동물원은 아래와 같이 설치하고 운영되어야 한다.

1. 각 동물종의 생물적 생존적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특히 사육장의 위치, 규모 및 형태, 내부시설 등은 동물종의 생태에 부합되어야 한다.

2. 동물은 현존하는 수의학 최고의 수준을 적용한 예방, 치료 및 영양관리 계획서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3. 유해생물의 유입과 동물의 탈출을 방지하고

4. 동물 및 종 보호 규칙을 준수하며

5. 동물 등록대장을 만들어 기록하고 수시로 갱신하고

6. 생물종 다양성의 보존에 대하여 사회의식의 계몽을 지원해야 하며 특히 전시 동물의 종과 이들의 천연 비오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7. 또한

a) 종 보호를 위한 연구 및 정보교환에 참여하거나 혹은

b) 종을 번식하여 천연 비오톱에 재정착시키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혹은

c) 종 보호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해야 한다.

(4) 아래의 경우 위의 (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허가될 수 있다.

1. (3)항의 조건이 만족되었다고 판단되고

2. 본장에 의거한 모든 요구조건에 대한 검증자료가 제출되고

3. 동물원 운영자와 책임자의 신용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고

4. 동물원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 이를 금하지 않을 때

단 허가는 조건부로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동물원 폐지 시 필요한 안전방안과 원상태로의 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

(5) 각 연방주는 (2)항 1호에서 규정한 허가에 동물보호법 제11조 1항⁷⁵⁾에 따른 허가를

수령할 수 있다.

(6) 담당 관청은 위의 (3)항과 (4)항에서 요구된 사항들이 준수되는지의 여부를 정기적인 심사와 방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제52조가 적용된다.

제43조 동물사육시설

(1) 동물사육시설은 야생동물을 주거지나 상업시설 외의 장소에서 연간 최소 칠일 이상 기르는 장기 시설로서 제42조 (1)항에 의거한 동물원에 속하지 않는 곳을 말한다.

(2) 동물사육시설은

1. 제42조 (3)항 1-4호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충족하고
2. 자연생태와 풍경을 해치지 말아야 하며
3. 이로 인해 삼림, 경작지 및 하천 호소로의 진입로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

(3) 동물사육시설의 설치, 확장, 개조 및 운영은 담당 관청에 최소한 한 달 이전에 통보해야 한다. 담당 관청은 (2)항 규정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방법으로 적법한 상태가 조성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동물사육장의 철거를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제42조 (8)항 2호와 3호가 적용된다.

(4) 각 연방주는 (3)항의 조건이 아래의 사육장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할 수 있다.

1. 연방주의 감독 대상에 속하거나
2. 단기적으로 설치되거나 또는 면적이 적거나 또는
3. 사육되는 동물의 숫자가 적거나 혹은 사육이 매우 용이한 동물일 경우.

(4) 각 연방주에서 내린 법령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3부 특별 종 보호

75) 동물보호법 제11조 1항은 목록에 지목된 동물들을 여러 용도로 사육하거나 거래하고자 하는 자들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다.

제44조 특별보호종 동식물에 대한 보호규정

(1) 금지사항

1. 특별히 보호된 야생동물종을 쫓거나, 포획하거나 상해하거나 살상하거나 혹은 변태된 상태를 자연에서 취해가거나 훼손 혹은 파괴하는 행위
2. 엄격히 보호된 야생동물종과 유럽 조류종을 번식, 부화, 털갈이, 월동 및 이동기간 중에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 이때 현저한 방해란 그 결과로 일정한 구역에서 한 종의 개체군 보존상태가 장애를 입을 때를 말한다.
3. 특별히 보호된 야생동물종의 번식 및 휴식 장소를 자연에서 취하거나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4. 특별히 보호된 야생종 식물 혹은 이들의 변태형태를 자연에서 취해가거나 식물과 식물의 서식환경을 훼손하거나 혹은 파괴하는 행위

(포획 및 채취 금지)

(2) 추가 금지사항

1. 특별히 보호된 동물종과 식물종을 취하여 소유하거나 가두거나 혹은 이를 가공하는 행위 (소유금지)
2. 제7조 (2)항 13호 b목에 의거 특별히 보호된 동물종과 식물종을
 - a) 거래하거나 혹은 거래를 목적으로 가두거나 저장하거나 혹은 이동시키거나 교환하거나 혹은 금전을 받고 빌려주거나 혹은 이용을 위해 위임하는 행위
 - b) 상업적 목적으로 구매하여 전시하거나 혹은 기타 방법으로 이용하는 방법

(상거래 금지)

유럽 생물종 보호법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소유 및 상거래 금지는 아래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1. 어린 기각류 모피 지침이 발령된 1983년 9월 30일 이후에 유럽공동체로 유입된 품목 중 해당 지침의 부록⁷⁶⁾에서 정의한 품목들의 소유 및 상거래
2. 제54조 (4)항에 근거하여 발령한 법규명령에 명시된 동물과 식물 일체

76) 유럽연합지침 83/129/EC, 즉 어린 기각류 모피의 유럽연합권으로의 반입과 상거래를 금지하는 지침. 부록에 명시된 품목:

하프물범 (흰털)과 두건물범 (청색 등털)의 가공하지 않은 모피와 무두질한 모피, 조각으로 잘라 붙인 모피 등 일체의 가공품

(4) 농업, 임업 및 어업이용 및 이를 통해 얻은 산물의 가공이 제5조 (2)항부터 (4)항까지에 명시된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고 연방토양보호법 제17조 2항과 농업, 임업 및 어업에 관련된 법규에서 요구하고 있는 우수한 실무에 부합되는 경우 포획, 소유 및 거래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서식지 지침 부록 IV에 등록된 종과 유럽 조류 종 혹은 제54조 (1)항 2호에 의거하여 발령된 법규명령에 포함된 생물종들과 관련해서는 한 생물종의 국지적 개체군의 상태가 경제행위로 인해 나빠지지 않는 경우 해당된다. 타 보호방안, 특히 서식지보호, 종 보호프로그램이나 계약 혹은 계몽 등을 통해 보장되지 않는 한 담당 관청에서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원인자에게 필요한 방법을 지시할 수 있다. 각 연방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규명령의 발령권한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5) 제15조에 의거 허용되는 자연침해 및 제18조 (2)항 1호에서 말하는 건설법전에 의거하여 허가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2-5 호의 포획, 소유 및 거래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서식지 지침 의 부록 IV, a에 열거된 동물종, 유럽 조류종 혹은 제54조 (1)항 2호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법규명령에서 말하는 종들이 침해되는 경우 (1)항 3호에 위배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야생동물에 대한 피할 수 없는 침해와 관련하여서는 침해받은 번식지와 휴식지의 생태기능이 공간적 맥락 속에서 지속될 수 있을 때 (1)항 1호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 보상방안을 앞당겨 확정할 수 있다. 서식지 지침의 부록 IV, b에 열거된 야생 식물의 서식지에 대해서는 2호와 3호가 적용된다. 기타 특별히 보호된 생물종이 영향을 받는 경우 침해 혹은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포획, 소유 및 거래 금지에 대한 위배행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6) 포획, 채취 및 소유금지는 전문가가 법적으로 지정된 검사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매우 조심스러운 방법으로 표본이나 동식물 개체를 취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서식지 지침의 부록 IV, a에 열거된 동물종 중 다치거나 살상된 수를 전문가가 조사하여 자연보호와 풍경관리 담당관청에게 해마다 보고해야 한다.

제45조예외; 법규명령 제정권한

(1) 제54조 (5)항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아래와 같은 경우 소유금지조항에서 제외된다.

1. 특별히 보호된 동물종과 식물종 중에서 합법적으로

- a) 유럽공동체 내에서 사육, 재배되고 소유주가 없으며 인공적 번식법으로 얻어졌거나 혹은 자연에서 취득한 경우
- b) 제3국에서 유럽공동체로 유입된 경우.

2. 제54조 (4)항에 의거 발령된 법규명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동물종과 식물종이라도 법규발령 이전에 유럽공동체 내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경우

제7조 (2)항 13호 b목의 동물종 및 식물종 중 2002년 4월 3일 이후에 제43조 (8)항 2호 혹은 2010년 3월 1일까지 유효했던 연방자연보호법 제62조에 따라 제외되지 않은 경우 혹은 2010년 3월 1일 이후 (8)항에 따른 예외허가를 받지 않고 제3국에서 국내로 유입된 경우 (1)항 1호 b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7조 (2)항 13호 b목 bb에서 말하는 유럽조류종 중 죽은 동물은 연방수렵법 제2조 (1)항에 의거 수렵권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적 내지는 가정용으로 예외허가를 받지 않고도 제3국에서 국내로 직접 반입할 수 있다.

(2) 위의 1항에서 소유를 금지하지 않은 동물과 식물은 상거래 금지 규정에서도 제외한다. 제52조 5항에 의거한 법규명령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은 동물과 식물을 자연에서 포획 또는 채취한 경우 예외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1. 특별보호종 동물과 식물
- 2. 유럽공동체의 조류종

(3) 아래와 같은 경우 상거래 금지에서 제외한다.

- 1. 멸종 위기 종으로 보호하기 이전에 또는 합법적으로 구입한 동물과 식물
- 2. 유럽조류보호지침 부속서 III, 제1부에 명시한 유럽공동체의 조류종 중 1981년 4월 6일 이전에 합법적으로 구매한 경우
- 3. 유럽연합의 야생 동식물 생활권 보호지침(92/43/EU) 및 야생조류 보존에 관한 지침(2009/147/EC)에 해당하는 동물과 식물 중 회원국가에서 위의 제44조 2항 1문 2호에 의거하여 릴리즈한 경우

(4) 소유와 상거래 금지와 달리 수렵 및 어업법의 규정을 감안하여 죽은 채로 발견된 동물과 식물을 자연에서 발견한 경우 이를 담당 자연보호기관에 제출하거나 아니면 특별보호종이 아닌 경우 연구나 수업의 목적 또는 박제를 위해 이용할 수 있다.

(5) 제44조 1항 1호의 금지 조항 및 소유금지 조항과는 달리 수렵 및 어업법에 의거하여 부상당하거나 도움이 필요하거나 병든 동물을 데려가 치료하는 것은 허용한다. 이때 완치된 뒤 바로 자연에 풀어주어야 한다. 담당 자연보호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다. 특별보호종의 경우 발견하여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즉시 담당 자연보호기관에 신고한다. 이때 자연보호기관은 해당 동물을 내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6) 담당 기관은 몰수한 동물과 식물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유럽 공동체의 법에 저촉하지 않으면 소유 및 상거래 금지로부터 제외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몰수 담당기관이 연방 관할일 경우 연방 기관에서 금지 제외를 허가한다.

(7) 자연보호 담당 기관 및 외국에서의 반입의 경우 연방 자연보호기관에서 아래의 항목이 해당하면 제44조 금지 조항으로부터의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경제, 임업경제, 어업경제 또는 수자원경제 또는 기타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2. 자생하는 동물계와 식물계를 보호하기 위해.
3. 연구, 교습, 교육 목적 또는 해당 동식물을 자연에 재정착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이를 위한 재배, 사육 또는 인공 번식을 위해,
4. 인체의 건강을 위해 또는 시민사회의 보호를 위해 또는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 또는
5. 기타 사회적 경제적 공익을 위해

적절한 대안이 없을 경우, 특정 생물종의 개체수 보존 상태가 나빠지지 않으며 유럽연합의 야생 동식물 생활권 보호지침(92/43/EU) 및 야생조류 보존에 관한 지침(2009/147/EC)을 고려한 경우에 한해서 금지조항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각 연방주의 정부는 법규명령을 제정하여 금지 제외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이때 위의 4문에 의거 법규를 통해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8) 연방자연보호청은 외국에서 반입하는 경우에 대해 7항 2문과 3문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 2항 13b호에 의거 특정 동물종과 생물종 내지는 재배/사육종이나 인공 번식한 종을 합리적이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용하기 위함이다.

제46조등록의무

(1)

1. 특별히 보호된 동물이나 식물을 산 채로, 변태형태를 산채로 혹은 죽은 상태로 혹은 죽은 동물이나 식물을 거의 온전히
2. 엄격히 보호된 동물종이나 식물종으로 확연히 알아볼 수 있는 부위 혹은 그들로부터 얻어진 생산물임을 확연히 알아볼 수 있는 상태로 혹은
3. 제54조 (4)항에 의거 발령된 법규명령에서 정의한 식물과 동물을 산 채로

소유하거나 혹은 이용권을 보유한 자들은 본인의 권리를 입증할 수 있거나 혹은 제54조 (4)항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법규명령이 발령되기 이전에 소유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자연보호와 풍경관리 담당관청이 이를 요구하는 경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2) 위의 (1)항 2호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개인적 혹은 가정용도의 품목의 경우 (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히 보호된 종의 목록이나 제54조 (4)항에 의거한 법규명령이 제정되기 이전에 구매했으며 개인 혹은 가정용으로 쓰는 품목의 경우 위의 (1)항에서 요구하는 증거대신 소명疎明 이면 족하다. 담당관청은 적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해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3) 유럽 종 보호법 제8조 혹은 제9조에 칭한 행위에 대한 권리 입증의 의무가 있거나 혹은 입증서류가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규정대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제47조 몰수

증거서류 혹은 소명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자연보호 및 풍경관리 담당관청에서 해당 동물과 식물을 몰수할 수 있다. 이에 제51조가 적용된다. 제51조 (1)항 2호의 경우 제삼의 전문기관 혹은 전문가로부터 감정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적용된다.

4 부

담당관청, 동식물 방출

제48조 담당관청

(1) 유럽 종 보호법 제13조 (1)항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 제9조에 따르면

1. 가입국가들 및 사무국과의 대화는 연방환경부의 소관이다. 아래 2호 a와 c 및 4호에서 규정된 과제 및 유럽 종 보호법 제13조, 제15조 (1)항과 (5)항 및 (20)항의 과제는 제외된다.

2. 연방자연보호청은

a) 유럽 종 보호법 제4조 (1)항, (2)항 및 제5조 (1)항, (4)항 및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 제9조 (1)항 a목에 따라 반입과 반출, 재반입의 허가를 내리고 유럽연합 사무국과 대화하며 기타 회원국 비회원국과 함께 반입 반출법 위반행위를 추적한다. 그 외에 유럽 종 보호법 제15조 (4)항 a목, c목에서 규정하는 과제를 수행한다.

b) 유럽 종 보호법 제8조 (3)항에 따라 예외를 허가한다.

c)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 제7조 (4)항에

의거 거래의 목적으로 개체들을 사육하거나 인공적으로 번식하는 사업체의 인증을 담당한다. 또한 유럽 종 보호법 제7조 (1)항 4호에 따른 등록절차를 사무국에 통보한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 제9조 (2)항)

d) 유럽위원회의 종 보호법 집행을 위한 시행규칙 865/2006⁷⁷⁾의 제30조, 제37조 및 제44a조에 의거하여 증서를 발행한다. 이는 유럽 종 보호법에 의거하여 멸종 위기종의 거래를 감시함으로써 야생 동식물의 표본을 보호하기 위한 집행규정이다.

e) 유럽위원회의 종 보호법 집행을 위한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라 철갑상어알 포장 회사의 등록을 맡는다.

f) 제51조에 의거 세관에서 압류한 살아 있는 동물과 식물 및 죽은 동물과 식물, 그 부위나 가공품 중 엄격히 보호된 종의 사후활용을 관리한다.

3. 종 보호 범죄와 관련하여 사무국과의 정보교환은 연방세관행정부서에서 관할한다.

4. 유럽 종 보호법에 관련되는 기타 모든 제방 사항은 각 연방주의 자연보호와 풍경관리 담당관청의 관할이다.

(2) 유럽 종 보호법 제13조 (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은 연방자연보호청이다.

제49조세관의 역할; 법규명령 제정권한

(1) 유럽연합법에 의거 유입과 반출이 규제되어 있는 동물과 식물의 이동은 연방경제부와 산하 세관에서 감시한다. 세관은 본장에 의거하여 제3국⁷⁸⁾과의 거래에서 소유금지와 매매금지 사항을 감시하고 동식물 반입반출법에 위배되거나 앞 절의 금지조항에 위배된다는 증거가 명백할 경우 제출된 서류를 제48조에서 지정한 담당관청에 전달한다.

(2) 연방경제부는 연방환경부와 합의하에 연방대표회의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위의 (1)항에 관련된 절차에 대한 법규명령을 제정할 권한이 있다. 이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신고, 등록, 정보제공의 의무 및 지원, 서류심사 기타 업체 방문조사 표본채취 등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3) 연방환경부로부터 연방경제부와의 합의하에 본장에 의거 동식물의 반입, 반출, 통관 시 신고해야 하는 세관정보를 연방연보에 공개한다. 살아있는 동물과 식물을 신고해야 하는 세관은 특별히 강조해야한다.

77) COMMISSION REGULATION (EC) No 865/2006 of 4 May 2006, laying down detailed rules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Council Regulation (EC) No 338/97 on the protection of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by regulating trade therein

78) 역주: 제3국은 독일과 계약관계가 없는 국가를 칭하며 세관 관계의 경우 대외무역법 제2조 8항에 의거 유럽연합에 속하지 않는 모든 국가를 칭한다.

제50조제3국 반입 반출

(1) 유럽연합의 반입반출 법에 저촉되는 혹은 제3국에서 유입할 때 연방환경청의 예외허가를 받아야하는 동물과 식물을 제3국에서 본법의 효력권 내로 반입하거나 혹은 제3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반입반출 혹은 통과에 대한 허가서나 그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허가서 혹은 그에 준하는 서류는 제49조 (3)항에서 공개한 세관에서 받아야 하며 요구하면 제시해야 한다. 연방자연보호청은 통관자가 신청하면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지정세관 이외의 세관을 명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세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를 반대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야 한다.

(2) 반입반출 혹은 통관하는 자는 살아 있는 동물의 도착시간 및 동물의 종류와 숫자를 최소한 도착 18시간 전에 해당 세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51조세관에 의한 회수, 몰수, 보관

(1) 감시 작업 중 동물과 식물의 반입반출에 대한 의혹이 생기거나 혹은 제49조 (1)항에 의거 금지되었을 때 세관은 동물과 식물을 회수하여 의혹이 제거될 때까지 보관하거나 제3자에게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반입반출자가 담당한다. 세관은 반입반출에게 활용금지 조건하에 동식물을 넘겨줄 수 있다. 의혹을 제거하기 위해 세관은 반입반출자에게 연방환경부와는 무관한 제3 전문가 혹은 전문인에게 의뢰하여 감정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해당 동물과 식물이 유럽연합의 반입반출 금지목록에 포함되지 않거나 혹은 본장에 의거 소유 내지는 거래금지 목록에 들어있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의혹이 근거없었음이 증명되면 연방이 반입반출자에게 감정서 및 제반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2) 감시 중 동물과 식물이 허가나 기타 증명서 없이 반입반출 혹은 통관됨을 확인하는 경우 세관에서 몰수할 수 있다. 몰수된 동물과 식물은 당사자에게 이용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넘겨줄 수 있다. 허가증이나 기타 서류를 한 달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세관은 다시 회수할 수 있다. 회수 기간은 최대 육 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반입반출이 전혀 금지된 동식물임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즉시 회수해야 한다.

(3) 제50조 (1)항에 의거 세관의 감시 중에 소유 및 거래조항에 위배되는 품목이 반입반출됨이 확인되면 위의 2항이 적용된다.

(4) 회수 혹은 압수된 동물과 식물이 경매에 붙여지면 그 수입은 소유주에게 지불된다. 이때 소유주가 회수 내지는 압수 상황과 아무 관련이 없음이 밝혀져야 한다. 개입된 제3

자의 권리가 이로 인해 소멸되는 경우 수입금에서 배상해 준다.

(5) 동물이나 식물이 회수 혹은 몰수되는 경우 이때 발생하는 비용, 특히 관리, 보관, 배송, 반송 및 활용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반입반출 당사자가 부담한다. 당사자가 밝혀지지 않는 경우 압수나 회수와 관련된 상황을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하는 발신자, 배송자 혹은 주문자에게 부담시킨다.

5부

정보, 접근권; 수수료, 경비

제52조정보요구권, 접근권

(1) 자연인과 법인 및 비법정 단체는 자연보호와 풍경관리 담당관청 혹은 제49조에 의거한 참여기관에게 이들이 요구하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때 정보요구는 유럽공동체의 권력행사, 본 장에서 요구하는 권력행사 혹은 이를 위해 발령된 법규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2) 위의 (1)항에서 언급한 기관에서 위탁받은 자들은 필요에 따라 (1)항의 범위 내에서 정보 책임이 있는 회사나 업체의 사유지, 건물, 사무실, 해양시설, 선박 및 교통시설에 운영시간 내에도 접근 내지는 입장할 권리가 있다. 정보제공인은 필요에 따라 위탁인에 적극 협조하며 요구에 따라 서류를 보여주어야 한다.

(3) 정보 제공의무자에게는 형사 소송법 제55조⁷⁹⁾가 적용된다.

제53조수수료 및 제반 경비: 법령 제정권한

(1) 연방자연보호청은 본 장에서 규정한 혹은 유럽연 종 보호법에서 규정한 혹은 그에 준하는 공공업무 수행을 위해 수수료와 경비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방환경부는 연방식량농림부, 연방에너지경제부와의 합의하에 연방대표회의의 동의 없이 법규명령을 제정하여 수수료가 요구되는 항목, 수수료의 규모 및 경비상환 등을 규정하되 한계를 확실히 해야 한다. 이때 실제로 상환되는 경비는 연방수수료법과 상이할 수 있다.

79) 형사 소송법 제55조는 진술거부권에 관한 조항이다.

6부 위임

제54조 법규명령 제정권한

(1) 연방환경부는 연방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동물종과 식물종 혹은 이들의 개체군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법규를 별도로 발령할 권한이 있다.

1. 국내에서 사람의 침해로 인해 개체군이 위험에 처한 생물종, 혹은 제7조 (2)항 13호 b목의 생물종과 매우 흡사하여 혼동이 쉬운 생물종에 대해,
2. 독일연방국이 크게 책임을 지고 있는 멸종 위기에 처한 종에 대해

(2) 연방환경부는 아래의 경우 연방대표회의의 동의하에

1. 제7조 2항 13호 a목과 b목에서 특별히 보호된
 - a) 유럽 종 보호법에 등록되어 있는 종
 - b) 유럽 조류종
2. (1)항의 동물종과 식물종에 대해

별도의 법규명령을 발령하여 엄격한 보호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단 천연자생종으로서 국내에서 멸종의 위기에 처해있으며 독일연방공화국이 특별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⁸⁰⁾

(3) 연방환경부는 연방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별도의 법규명령을 제정하여

1. 제7조 (2)항 1호 c목과 d목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특별히 보호된 생물종의 어떤 (신체) 부위들이 확실하게 인지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정의하고
2. 특별히 보호된 생물종을 정의하거나 혹은 그들의 유래를 밝히고 재배되거나 인공적으로 번식된 특별보호종을 전반적, 부분적 혹은 특정한 조건 하에 제44조의 금지조항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때 서식지지침 제12조, 제13, 제16조, 조류지침 제5조, 제7조, 제9조 및 기타 유럽공동체의 법령 혹은 국제생물종보호 협약에서 유래한 보호목표의 책임이 이를 통해 위배되지 말아야 한다.

(4) 연방환경부는 필요한 경우 제44조 (3)항 2호에 따라 제44조 (2)항의 금지조항을 적용하여 생태계, 비오톱 혹은 생물종에 가해지는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연방대표회의의 동

80) 독일은 연방제도에 근거하여 연방보다는 각 연방주의 입법권이 우선하므로 이런 단서가 붙게 된다.

의를 얻어 별도의 법규명령을 발령하여 침입 동식물종을 정의할 권한이 있다.

(5) 연방환경부는 종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유럽연합의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한 연방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제54조 (4)항의 규정으로 특별히 보호된 동물종과 식물종에 대해 별도의 법규명령을 발령하여

- 1. 동물을 가두거나 혹은 사육하는 행위
- 2. 동물과 식물을 거래하는 행위

를 금하거나 규제할 권한이 있다.

(6) 연방환경부는 종보호의 목적으로 특히 서식지지침 제15조 및 조류지침 제8조 혹은 국제생물종보호 협약에서 유래한 보호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연방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별도의 법규명령을 제정하여

- 1. 야생동물을 무차별하게 살상하거나 포획하거나 혹은 식물을 제거하거나 생장을 억제할 수 있는 혹은 그 결과로 국지적으로 해당 동식물종이 사라지거나 혹은 개체군 발달에 현저한 침해를 줄 수 있는 특정 도구, 기구 혹은 시설의 생산, 소유 및 거래 혹은 이용 및
- 2. 국지적으로 야생 동식물종이 사라지거나 혹은 그들의 개체군 발달에 현저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나 절차

등을 규제하거나 금지할 권한이 있다. 위의 1호는 타법규에 의거하여 면허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허가 시 종보호의 목표가 감안되는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7) 연방환경부는 연방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멸종위기에 처해있고 방해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는 조류종들의 동지보호법규를 제정하여 특정 기간 내에 특정한 간격으로 번식 및 부화를 방해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할 권한이 있다. 예외조항을 포함한 다른 보호법규들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8) 연방환경부는 소유 및 거래금지의 감시가 용이하도록 연방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법규명령을 제정하여 아래의 사항들을 규정할 수 있다.

- 1. 특별히 보호된 동물종 혹은 식물종을 상업적으로 가공하거나 거래하거나 혹은 구입하는 자들에 대한 등록의무를 지울 수 있으며 특히 등록의무자들, 등록의무의 대상과 범위, 등록대장의 보관기간, 자연보호와 풍경관리 담당관청을 통한 감시 등에 대한 규칙,
- 2. 제46조에 따른 검증을 위해 특별히 보호된 동물종과 식물종의 표시
- 3. 제46조에 따른 검증을 위해 동물과 식물을 합법적으로 구입할 때 증서 발행

4. 소유 신고

a) 특별히 보호된 동물종과 식물종

b) 제54조 (4)항에 근거하여 발령된 법규명령에서 정의하는 동물과 식물

(9) (1)항과 (2)항에 의거한 법규명령은 연방식량농업부, 연방교통 디지털 인프라부 및 연방에너지경제부와 합의해야 한다. (6)항 1절 1호 및 (8)항 1호 2호 및 4호에 의거한 법규명령은 연방에너지경제부와 합의해야 한다. 그 외 (1)항에서 (8)항까지에 의거한 법규명령은 연방식량농업부와 합의하여야 하며 (1)항에서 6호와 8호는 아래의 경우에만 합의한다.

1. 수렵법 혹은 어업법에서 정의한 동물종
2. 친환경적 식물보호를 위해 활용되는 동물종 혹은
3. 인공적으로 번식하거나 임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식물종

(10) 각 연방주는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위한 토양이용에 대해 제44조 (4)항에 의거한 일반적 요구사항을 법규명령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또한 위의 문장에서 말하는 법규명령의 제정을 다른 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11) 연방정부는 연방대표회의의 동의를 구해 본법을 집행하기 위해, 특히 아래의 규정에 대해 일반 행정규칙을 발령할 수 있다.

1. 계획과 사업이 제34조 (1)항에 따라 호환될 수 있는 여건과 조건
2. 제34조 (3)항에 따라 환경영향이 있음에도 허가를 내릴 수 있는 결정 기준
3. 제34조 (5)항에 따라 Natura 2000 네트워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

제55조 유럽법 및 국제법 집행; 법규명령 제정권한

(1) 제54조에 의거한 법규들은 유럽연합의회 혹은 정상회의의 종보호 법규들이나 국제종보호협약을 집행하기 위해서도 제정될 수 있다.

(2) 연방환경부는 연방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본법에 수렴된 유럽연합의 법규에 연계시키거나 필요한 경우 제54조에 근거한 법규명령들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제 6 장 해양자연보호

제56조 효력 및 적용 범위

- (1) 본법의 조항들은 연안 해역에도 적용되며 제2장을 제외하고는 1982년 12월 10일 작성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규정과 독일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도 적용된다.⁸¹⁾
- (2) 위의 1항에서 언급한 해역에서 일정 지역을 20조 (2)항에 따라 자연과 풍경의 보호구역으로 선언함으로써 유럽연합의 해양전략기본지침⁸²⁾에서 요구하는 대로 넓은 해양지역을 보호하고 이들간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 (3) 독일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2017년 1월 1일 이전에 승인된 시설과 해상풍력에너지법 제34조⁸³⁾에 의거 승인된 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제15조를 적용하지 못한다.
- (4)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침해에 대한 배상금은 목적에 구속되는 기금으로 연방에 지불된다. 연방환경부가 이 기금을 관리한다. 보상금 수입은 연방환경부의 지시에 따라 연방기관의 감독 하에 활용되거나 혹은 연방이 관리하는 재단이나 단체에 신탁될 수 있다.

제57조 독일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범위 내의 보호지역; 법규명령의 제정 권한

- (1) 독일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범위 내의 보호지역의 선정은 연방자연보호청에서 공공참여를 거쳐 연방환경부의 인가를 얻어 실행한다. 연방환경부는 이에 저촉되는 다른 부처들을 참여시키고 이웃국가들과 합의해야 한다.
- (2) 제20조 (2)항에 따라 해역을 자연과 풍경의 일부로 보호선언을 하는 것은 연방환경부의 소관으로서 법규명령의 형태로 발령한다. 이때 다른 부처들은 참여시켜야 하나 연방 대표회의의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다.
- (3) 독일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범위 내에 제32조 (1)항 제1문에 따라 보호지역을 선정하고 제32조 (2)항에 따라 자연과 풍경의 일부로 보호선언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81) 독일은 2006년 유럽 최초 국가로 배타적 경제수역에 해양보호지역을 지정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현재 10개소 약 140만 헥타르에 달하는 이 해양보호지역은 유럽 Natura 2000 해양 네트워크의 근간을 이룬다.

82) Marine Strategy Framework Directive 2008/56/EC

83) 해상풍력에너지법 제34조는 해상풍력에너지 시설 입찰 절차와 조건에 대한 규정.

1. 항공운행, 선박운행, 국제법으로 허가된 군사이용 및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246조 (3)항에 따른 해양연구 등의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211조 6항 및 기타 선박운행에 관련된 국제법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246조 (3)항에 따른 해양연구 프로젝트를 거부하는 것은 1995년 6월 6일에 제정 공표된 *해양과학연구 실시에 관한 법*⁸⁴⁾에 근거하며 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유럽연합법과 1998년 7월 6일에 제정 공표된 *해양수산업법*⁸⁵⁾의 규정에 따라 어업규제가 가능하다.
4. 해저케이블과 배관 설치의 규제는 제34조와 제56조 (3)항 및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79조와의 관계 속에서만 적법하다.
5. 수력발전, 조력발전, 풍력발전, 지하자원의 탐사 및 채굴의 제한은 제34조에 의거하여야만 적법하다.

제58조담당관청; 수수료 및 경비; 법령 제정권한의 위임

(1) 독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범위 내에서 본법의 규정, 본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의 집행하는 것과 종과 천연서식지의 훼손 및 그로 인한 직접적 위험의 관점에서 환경보상책임법의 규정을 집행이 독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할 때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방자연보호청의 관할이다. 독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자연과 풍경에 대한 침해가 요구되거나 혹은 실시되어야 하는 경우 기관의 승인 혹은 기관에의 통보 혹은 기관이 사업의 주체인 경우 연방자연보호청과의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2) 연방환경부는 위의 (1)항과 관련된 연방자연보호청의 과제에 대해 별도의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 이때 연방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며 연방내무부와 합의하여 연방경찰청에, 또는 연방식량농림부와 합의하여 연방농업진흥청에 과제를 위임할 수 있다.

(3) 독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범위 내에서 위의 (1)항 1문장에서 언급한 공공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방자연보호청은 수수료와 경비를 요구할 수 있다. 연방환경부는

84) 해양과학연구 실시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Durchführung wissenschaftlicher Meeresforschung은 모두 5조로 구성된 짤막한 법으로서 무엇보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연구프로젝트 거절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85) 해양수산업 Seefischereigesetz은 1971년 처음으로 제정되었으며 2016년까지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특히 배타적 경제수역 및 북해와 발트해에서의 어업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어업 및 해양보호에 대한 유럽연합의 공통적 이해를 수렴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방재정부와의 합의하에 연방대표회의의 동의 없이 법규명령을 제정하여 수수료가 요구되는 항목, 수수료의 규모 및 경비상환 등을 규정하되 한계를 확실히 해야 한다. 이때 실제로 상환되는 경비는 연방수수료법과 상이할 수 있다. 제53조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 7 장 자연과 풍경 내에서의 휴양

제59조 자연풍경으로의 진입

- (1) 도로 혹은 산책로를 이용하여 자연풍경에 진입하거나 이용되지 않는 토지에 휴양을 위해 진입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허용된다. (일반규정)
- (2) 삼림에 진입하는 것은 연방삼림경제법 및 각 연방주의 삼림법 또는 기타 연방주법의 구매를 받는다. 자연보호와 풍경관리의 목적, 경작지 보호 및 농업 임업이용 등의 중요한 목적으로 삼림에 진입하는 것 역시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다른 이용법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휴양객 보호, 현저한 침해 방지 및 토지소유주의 이해를 지키기 위해 제한될 수 있다.

제60조 책임

자연풍경으로의 진입은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자연풍경으로의 진입이 허용된다고 해서 안전을 추가적으로 보장된다는 뜻은 아니다. 자연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질 수 없다.

제61조 호소, 하천변 이용제한

- (1) 외곽지대를 흐르는 일급 연방수로와 기타 하천 및 일 헥타르 이상 크기의 호수에는 수변에서 50미터까지 일체의 시설물과 구조물을 세우거나 개조할 수 없다. 북해의 연안 해역에서는 평균 홍수위로 부터 최소한 150미터까지, 발트해에서는 평균해수위로부터 150미터까지다. 각 연방주 별로 수립된 규정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2) 아래의 경우 위의 (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1. 본법의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이미 존재했던 시설과 구조물

- 2. 수자원경제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 혹은 감시, 경제행위 혹은 오락을 위한 시설 혹은 제방시설 혹은 이를 개조하는 일
- 3. 대중교통시설과 부속시설, 구조救助시설, 해안시설, 홍수방지시설 및 국방시설

각 연방주 별로 수립된 규정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아래와 같은 경우 위의 (1)항의 금지조항에 대해 별도로 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 1. 시설과 구조물로 인해 자연생태와 풍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며 특히 물의 기능, 천변이나 해변 기능의 훼손이 미미하거나 적절한 방안으로 보완될 수 있거나 혹은
- 2. 공공의 이익, 특히 사회적, 경제적 이익이 앞설 때. 이 경우 제15조가 적용된다.

제62조토지제공의 의무

연방, 연방주 및 기타 법인들은 그들 소유의 토지 중 대중의 휴양이용을 위해 적절하거나 혹은 그런 풍경으로의 진입을 위해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을 때 다른 지속가능한 용도와 기타 자연보호 풍경관리 용도지가 아니고 공공시설로의 용도지정이 가능한 경우 공공의 휴양이용을 위해 토지를 제공한다.

제 8 장 공인된 자연보호협회의 참여

제63조참여권리

(1) 환경사법액세스와 환경단체소송권에 대한 법 제3조⁸⁶⁾에 의거 연방에서 인증 받은 협회 중 자연보호와 풍경관리를 목적으로 삼는 단체에게는 전문가 감정서의 열람과 그에 대한 의견제시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1. 연방정부 혹은 연방환경부가 자연보호와 풍경관리에 대한 법규 명령 규정 등을 준비할 때
- 2. 제57조 (2)항에 따라 보호된 해양지역의 수칙과 금칙의 예외 허가를 결정하기 전. 또한 제34조 (3)항에서 (5)항의 규정에 따라 제36조 제1문 2호와의 연계 하에 비침해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 결정이 다른 결정에 이미 수렴되었거나 개편되었을 경

86) Umwelt-Rechtsbehelfsgesetz. 2006년 제정, 2013년 본격화되었으며 2017년 7월 최종개정되었다. 산업단지나 시설건설 등 침해프로젝트 승인 절차에 대한 단체소송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참여의 범위가 매우 넓어졌으며 소송을 통해 구현이 불가능해진 대형프로젝트들이 속출하고 있다.

우에도 해당된다.

- 3. 연방기관이나 연방주의 기관이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계획확정절차를 실시하고 해당 사업이 자연과 풍경에 대한 침해와 관련되었을 때.
- 4. 연방기관이 계획을 승인하여 위의 3의 계획확정절차를 대신할 때 공공참여절차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단 해당 사업이 협회와 단체의 설립취지에서 정의한 과제범위를 범할 때에 한한다.

(2) 환경사법액세스와 환경단체소송권에 대한 법 제3조에 따라 연방주에서 인증 받은 자연보호협회 중 연방주 전역에서 활동하는 단체의 경우 전문가 감정서의 열람과 그에 대한 의견제시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1. 연방주의 담당기관에서 자연보호와 풍경관리에 대한 법규 명령 규정 등을 준비할 때
- 2. 제10조와 11조에 따라 프로그램과 계획을 준비할 때
- 3. 제36조 제1문 2호에 따라 계획을 준비할 때
- 4. 연방주정부 및 기타 공공기관이나 시설에서 야생 동물과 식물을 자연에 방출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

4a. 제42조 (2)항 첫째문장에 따라 동물원의 설치, 확장, 개조 및 운영의 허가를 결정하기 전

4b. 제45조 (7)항 첫째문장에 따라 법규명령 혹은 일반 재량으로 예외허가를 내리기 전

- 5. 제32조 (2)항에 따른 지역, Natura 2000 지역, 자연보호지역, 국립공원, 국립자연기념물, 생물권보호지역의 보호 수칙과 금칙의 예외허가를 내리기 전 또는 제34조 (3)항에서 (5)항까지의 예외결정을 내리기 전, 이때 다른 결정이 이를 이미 포함하고 있을 때에도 적용된다.

- 6. 자연침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계획확정절차시
- 7. 위의 6호에 따른 계획확정 대신 계획승인을 내리기 위해 공공참여가 계획되어 있을 때
- 8. 각 연방주법에 따른 각종 집행절차, 단 해당 연방주법이 단체참여를 규정하고 있어야 함.

해당 사업이 단체의 설립취지에서 정의한 과제범위를 범할 때에 한한다.

(3) 행정절차법 제28조 (2)항 1호와 2호, (3)항 및 제29조 2항⁸⁷⁾은 그대로 적용된다. 연방의 혹은 각 연방주에서 내린 동일한 내용의 법령 혹은 그 상위의 것이 존재할 경우 본 조항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4) 각 연방주는 자연과 풍경에 대한 영향이 없거나 혹은 미미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자연보호단체를 참여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할 수 있다.

제64조 분쟁권 (소송권)

(1) 인증된 자연보호단체는 환경사법액세스와 환경단체소송권에 대한 법 제1조 (3)항의 규정에서 반대하지 않는 한 제63조 (1)항 2호에서 4호까지와 (2)항 4a호에서 7호까지의 결정에 대해 연방행정재판소법의 규정에 따라 단체의 권리를 훼손당하지 않으면서 소송할 수 있다. 이때 해당연합이

1. 본법의 규정, 본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 각 연방주의 자연보호법, 혹은 기타 저촉되는 혹은 자연보호와 풍경관리에 기여하는 타법령을 위배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2. 연합의 설립취지에서 정의한 과제범위에 속하며
3. 제63조 (1)항 2호 혹은 (2)항 4a호에서 5호에 의거 참여권리가 있으며 의견을 제시했지만 수용되지 않았거나 혹은 의견제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 또는 제 63조 (1)항 3호 및 (2)항 6호도 적용된다. 이때 환경사법액세스와 환경단체소송권에 대한 법 제1조 (3)항에 따르지 않고 계획확정절차 시 연방자연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2) 환경사법액세스와 환경단체소송권에 대한 법 제1조 (3)항과 (4)항, 제2조 (3)항 제1문과 제5조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제63조 (2)항 8호에 따라 환경단체의 참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각 연방주는 인증된 자연보호단체의 소송을 허용할 수 있다.

제 9 장 토지수용, 예외조항

제65조 용인의 의무

87) 역주: 행정절차법 *Verwaltungsverfahrensgesetz* 제28조는 참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에 대한 조항이며 제29조는 공람에 관한 조항.

- (1) 토지소유주 및 이용권자는 본법의 규정, 본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 혹은 각 연방주의 자연보호법법에 따른 자연보호와 풍경관리 방안의 집행이 토지이용을 전혀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는 한 이를 용인해야 한다. 각 연방주의 해당 법령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2) 집행하기 전에 적절한 방법으로 당사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 (3) 자연보호기관의 직원이나 위임을 받은 자들이 업무수행을 위해 사유지에 진입할 수 있는 권한은 각 연방주법에 따른다.

제66조우선 매수권

(1) 각 연방주는 아래의 경우 토지의 우선 매수권이 있다.

1. 국립공원, 국립자연기념물, 자연보호지역 혹은 이에 상당하는 지역으로 묶인 토지
2. 천연기념물이나 그에 상당하는 기념물이 있는 지역
3. 지표수가 있는 지역

위의 1호에서 3호까지의 특성이 한 토지의 일부에 국한될 때 우선 매수권은 이 부분으로 제한된다. 이로 인해 소유주가 토지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없을 때 전 토지매수를 요구할 수 있다.

(2) 우선 매수권은 자연보호와 풍경관리 및 휴양배려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발휘할 수 있다.

(3) 토지대장에 우선 매수권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법적 거래 및 연방주법에 근거하여 토지매매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나 주거지를 제외하고 우선 매수권이 우위에 있다.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면 해당 토지를 법적거래에 의해 먼저 매입한자의 우선권이 무효화 된다. 민법 제463조에서 제469조까지, 제471조, 제1098조 2항 및 제1099조에서 1102조까지 적용된다. 배우자, 동거인 혹은 3촌 관계의 친척에게 양도할 때에는 우선 매수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4) 각 연방주는 재단이나 비영리단체, 인증된 자연보호협회가 신청하면 이들을 대신하여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각 연방주에서 다르게 규정한 법령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67조 예외

(1) 본법의 수칙과 금칙, 제57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 및 각 연방주의 자연보호법에 의거한 수칙과 금칙들에 대한 예외허가를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1. 공공의 이익, 특히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2. 규정의 집행에 의해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용인이 불가능할 때와 예외승인이 오히려 자연보호 및 풍경관리의 목표와 일치될 때

제5장의 범위 내에서는 위의 제1문이 제39조, 40조, 42조 및 43조에만 적용된다.

(2) 제33조 (1)항 제1문과 제44조의 금칙 및 제32조 (3)항에 따른 수칙과 금칙에 대해 예외허가가 가능하다. 단 규정의 집행에 의해 개별적으로 용인이 불가능할 때에 한한다. 해외에서 동물과 식물을 반입하는 경우 연방자연보호청에서 예외허가를 내린다.

(3) 예외허가 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5조 (1)항에서 (4)항까지와 (6)항 및 제17조 (5)항은 제14조에 따른 자연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을 때에도 적용된다.

제68조 재산권 제한; 피해보상 및 배상

(1) 본법의 규정, 본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 혹은 각 연방주의 자연보호법의 집행을 통해 재산권이 제한되고 개별적으로 용인이 불가능한 손실을 끼쳐 예외허가 등의 다른 방법으로 상쇄 되지 않을 때 적절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2) 이때 보상은 금전으로 행해진다. 연금의 형태도 가능하다.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경제성이 훼손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토지매수를 요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것은 각 연방주법에 따른다.

(3) 자연보호와 풍경관리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각 연방주법에 따른다.

(4) 각 연방주는 본법의 규정, 본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 혹은 각 연방주의 자연보호법에 의해 특히 농업 임업 어업의 용도가 용이치 않아지고 위의 (1)항과 (3)항에 따른 보상에 해당되지 않을 때 소유자나 이용권자들에게 예산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적절하게 보상한다.

제 10 장 과태료, 범법

제69조과태료규정

(1) 의도적으로 제39조 (1)항 1호에 반하여 야생동물을 불안하게 하는 자는 위법의 행위를 범하는 것이다.

(2) 위법의 행위를 범하는 자는

1. 제44조 (1)항 1호에 반하여 야생동물을 쫓거나, 포획하거나 상해하거나 혹은 살상하거나 동물의 변태형태를 자연에서 취하거나 훼손하거나 혹은 파괴하는 자
2. 제44조 (1)항 2호에 반하여 야생동물을 크게 방해하는 자
3. 제44조 (1)항 3호에 반하여 야생동물의 번식지, 휴식지를 자연에서 취하거나 이를 훼손 혹은 파괴하는 자 혹은
4. 제44조 (1)항 4호에 반하여 야생하는 식물이나 혹은 식물의 변태형태를 취하거나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자

(3) 위법의 행위를 범하는 자는 의도적으로 혹은 과실로

1. 제17조 (3)항 제1문에 따른 허가 없이 자연침해를 범하는 자
2. 제17조 (8)항 제1문 혹은 제2문, 제34조 (6)항 제4문 혹은 제5문, 제42조 (7)항 혹은 (8)항 제1문 혹은 제2문에 따라, 제43조 (3)항 제4문, 혹은 제43조 (3)항 제2문 혹은 제3문과의 관계에서의 집행규정을 위반하는 자
3. 제22조 (3)항 제3문에 반하여 이에 정의된 행위 혹은 방안을 실행하는 자
4. 제23조 (2)항 제1문과 제57조 (2)항에 의거하여 제정된 법규에 반하여 이에 정의된 행위나 방안을 해양지역 내의 자연보호구역에서 실행하는 자
- 4a 제23조 (2)항, 제24조 (3)항 제2문 혹은 제33조 (1a)항 제1문에 반하여 이에 명시된 시설을 설치하는 자
5. 제30조 (2)항 제1문에 반하여 그에 명시된 비오톱을 파괴하거나 현저하게 훼손하는 자
6. 제33조 (2)항 제1문과 관련 (1)항 제1문에 반하여 변화시키거나 혹은 방해하는 자

7. 제39조 (1)항 1호에 반하여 야생하는 동물을 아무 합리적 근거 없이 포획하거나 상해하거나 살상하는 자
8. 제39조 (1)항 2호에 반하여 야생하는 식물개체를 아무 합리적 근거 없이 채취하거나 이용하거나 혹은 균락을 짓밟거나 혹은 유사한 방법으로 파손하는 자
9. 제39조 (1)항 3호에 반하여 야생하는 동물이나 식물의 서식지를 아무 합리적 근거 없이 현저히 침해하거나 파괴하는 자
10. 제39조 (2)항 제1문에 반하여 야생 동물개체 혹은 야생식물개체를 자연에서 취해오는 자
11. 제39조 (4)항 제1문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않고 야생식물들을 상업적으로 채취하거나 이를 가공하는 자
12. 제39조 (5)항 제1문 1호에 반하여 명시된 면적의 피복식물을 태우거나 관리하는 자
13. 제39조 (5)항 제1문 2호에 반하여 나무 생울타리 수목군락 덤불 혹은 다른 목본 식물들을 자르는 자
14. 제39조 (5)항 제1문 3호에 반하여 갈대를 자르는 자
15. 제39조 (5)항 제1문 4호에 반하여 이에 명시된 수로나 개울을 청소 (벌초)하는 자
16. 제39조 (6)항에 반하여 굴, 갯도, 지하실 혹은 유사한 공간을 방문하는 자
17. 제40조 (4)항 제1문에 의거한 허가 없이 지역 환경에 맞지 않는 식물개체나 동물개체를 유입시키는 자
18. 제42조 (2)항 제1문에 의거한 허가 없이 동물원을 설치, 확장, 개조 혹은 운영하는 자
19. 제43조 (3)항 제1문에 반하여 통보를 하지 않거나 부정확, 불충분하게 하거나 혹은 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자
20. 제44조 (2)항 제1문 제1호 및 이와 관련된 제44조 (3)항 1호 혹은 2호 및 제57조 (4)항에 의거하여 수립된 법규명령에 반하여 동물개체, 식물개체 혹은 상품을 취하여 소유하거나 가공 내지는 변형하는 자
21. 제44조 (2)항 제1문 제1호 및 이와 관련된 제44조 (3)항 1호 혹은 2호 및 제57조 (4)항에 의거하여 수립된 법규명령에 반하여 동물개체, 식물개체 혹은 상품을 구입하거나 구매하거나 거래를 위해 내놓거나 혹은 적재하거나 혹은 배송하거나 교환 혹은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매수하여 전시하거나 혹은 기타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

- 22. 제50조 (1)항 제1문에 반하여 동물개체 혹은 식물개체를 반입반출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혹은 부정확, 불충분하게 하거나 혹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제시하지 않는 자
- 23. 제50조 (2)항에 반하여 통보를 안 하거나 부정확, 불충분하게 하거나 혹은 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자
- 24. 제52조 (1)항에 반하여 정보제공을 하지 않거나 부정확, 불충분하게 하거나 혹은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자
- 25. 제52조 (2)항 제2문에 반하여 위탁자에 협조하지 않거나 혹은 사업문서를 제시하지 않거나 부정확, 불충분하게 하거나 혹은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자
- 26. 제61조 (1)항 제1문 혹은 제2문에 반하여 하천이나 호소 변에 구조물이나 시설을 설치하거나 크게 개조하거나 혹은
- 27. 아래의 법규에 의거하여

- a) 제49조 (2)항
- b) 제54조 (5)항
- c) 제54조 (6)항 제1문, (7)항 혹은 (8)항

혹은 본 과태료규정에서 정의된 행위를 지칭하는 다른 규정들을 위반하는 자

(4) 위법의 행위를 범하는 자는 의도적으로 혹은 과실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유럽 중 보호법을 범하는 자이다.

위의 법 제4조 (1)항 제1문 혹은 (2)항 제1문 혹은 제5조 (1)항 혹은 (4)항 제1문에 반하여 반입허가, 반출허가 혹은 재반입허가를 제시하지 않거나 부정확, 불충분하게 하거나 혹은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 1. 위의 법 제4조 (3)항 제1문 혹은 (4)항에 반하여 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확, 불충분하게 하거나 혹은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 2. 위의 법 제8조 (1)항 및 이와 관련된 (5)항에 반하여 이에 명시된 종의 표본을 거래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구입하여 전시하거나 혹은 활용하거나 혹은 거래를 목적으로 표본을 적재, 홍보 혹은 배송하거나
- 3. 위의 법 제11조 (3)항 제1문에 의거한 조건들을 위배하는 행위

(5) 위법의 행위를 범하는 자는 1991년 유럽정상회의에서 유럽공동체 지역에서의 짐승뿔 사용을 금지하고 뿔이나 이와 유사한 국제 인도적 포획기준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포획한 특정 동물의 모피 반입을 금지하기 위해 결의한 법의 규정을 의도적 혹은 과실로 범하여

1. 위의 법 제2조에 반하여 덫을 이용하거나

2. 위의 법 제3조 (1)항 제1문에 반하여 이에 정의된 동물의 모피나 혹은 가공품을 유럽공동체로 반입하는 자

(6) 위의 (1)항, (2)항, (3)항의 1호에서 6호까지, 18호, 20호, 21호, 26호와 27호 b목, (4)항의 1호, 3호 및 (5)항을 위배하는 경우 최대 오만 유로의 과태료를, 그 외에는 최대 일만 유로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7) 각 연방주는 본법의 규정 혹은 본법을 근거로 제정된 법규명령의 위반이나 기타 위법행위나 비난 받을 행위에 대해 별도의 법을 정해 처벌할 수 있다.

제70조 행정기관

제36조 (1)항 1호에 따른 처벌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1. 아래의 경우 연방자연보호청이고

a) 제69조 (3)항 20호와 21호 및 (4)항 3호의 사항이 유럽공동체 혹은 독일연방공화국으로의 반입반출과 관련될 때

b) 제69조 (3)항 24호의 사항이 연방관청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에 해당될 때

c) 제69조 (3)항 25호와 (4)항 4호의 사항이 연방관청의 방안에 해당될 때

d) 제69조 (4)항 1호 및 (5)항 2호의 사항

e) 제69조 (1)항에서 (5)항까지 중 독일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의 범위 내에 있을 때

2. 제69조 (3)항 22호, 23호와 27호 a목 및 (4)항 2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담당 세관이

3. 나머지 경우에는 각 연방주의 법에서 지정하는 관청이 관할한다.

제71조 벌칙규정

(1) 아래의 조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는 오년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형을 부과한다.

1. 제69조 (2)항 혹은

2. 제69조 (3)항 21호, (4)항 1호 혹은 (5)항

엄격히 보호된 생물종에 대해 위의 규정을 의도적으로 위반했을 때.

(2) 유럽 종 보호법 제8조 (1)항에 반하여 부록 A에 정의된 생물종의 개체를

- 1. 거래하거나 거래를 위해 흥정하거나 혹은 적재하거나 혹은 배송하거나 혹은
- 2. 상업적 목적으로 매수하여 전시하거나 기타 용도로 활용하는

자들에게는 같은 방법으로 벌칙을 가한다.

(3) 위의 (1)항 혹은 (2)항을 상업적 혹은 습관적으로 범하는 자는 삼 개월 이상 오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위의 (1)항 혹은 (2)항에서 범인이 해당 동물과 식물에 가해진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최대 일 년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한다.

제71a조 추가벌칙규정

(1) 아래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는 자는 징역 3년 이하 혹은 벌금형을 부과한다.

- 1. 제44조 (1)항 1호에 반하여 조류지침 제4조 (2)항과 부록 I에 정의된 특별히 보호된 야생 동물을 살상하거나 그 변태형태를 자연에서 취하거나 혹은 파괴하거나
- 2. 제44조 (2)항 제1문 1호에 반하여 동물개체나 식물개체를 포획 채취하거나 포획 채취하여 소유하거나 가공하되 이때 해당 개체가
 - a) 엄격히 보호된 종으로서 서식지 지침 부록 IV에 등록되었을 경우 혹은
 - b) 엄격히 보호된 종으로서 조류지침 제4조 (2)항 혹은 부록 I에 명시되었을 경우 혹은
- 3. 제69조 (2)항과 (3)항 21호, (4)항 1호 혹은 (5)항에서 규정한 행위를 상업적 혹은 습관적으로 범하는 경우.

(2) 유럽 종 보호법 제8조 (5)항 및 이와 관련된 (1)항에 반하여 부록 B에 명시된 생물종의 개체를 아래와 같이 다루는 경우 벌칙이 과해진다.

- 1. 거래하거나 거래를 위해 광고하거나 혹은 적재 혹은 이동시키거나 혹은
- 2. 상업적 목적으로 구매하여 전시하거나 기타 활용하는 행위

(3) 위의 (1)항 1호 혹은 2호 혹은 (2)항의 경우 범인이 부주의하여 해당 동물개체 및 식물개체와 관련된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일 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형을 부과한

다.

(4) 위의 (1)항 1호나 2호, (2)항 혹은 (3)항의 행위는 개체수가 미미하거나 해당 생물종의 보존상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벌칙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72조 몰수

제69조 (1)항에서 (5)항까지 혹은 제71조 혹은 제71a조에 의거 위법이 행해지면

1. 해당 사물이나 개체 및
2. 이를 위해 이용된 도구 등은 몰수할 수 있다.

질서위반에 관한 법률 제23조⁸⁸⁾ 및 형법 제74a조⁸⁹⁾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73조 세관의 권한

담당관청과 검찰은 본법에 따른 범법행위나 질서위반행위를 규명하기 위해 그들의 권한 내에서 세관과 세관조사기관 및 기타 공무원들에게 조사를 시킬 수 있다. 대외무역법 제 21조 2항에서 4항⁹⁰⁾이 적용된다.

제 11 장 경과 규정

제74조 이행^{移行} 및 경과규정

(1) 2010년 3월 1일 이전에 시작된 단체인증절차는 끝까지 진행시킨다.

1. 2010년 2월 28일까지 유효했던 연방자연보호법 제59조⁹¹⁾에 의거하여 연방환경부가
2. 동법 제60조 (1)항과 (3)항⁹²⁾에 의거 각 연방주에서 제정한 법규명령에 따라 담당

88) 역주: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질서위반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몰수조건에 관한 조항이다.

89) 역주: Strafgesetzbuch (StGB) 독일형법. 제74a조는 범법행위에 이용된 도구나 물건 장치 등의 몰수에 관한 조항이다.

90) Außenwirtschaftsgesetz (AWG) 대외무역법. 제21조 2항에서 4항은 세관의 업무범위와 권한에 대한 조항이다.

91) 2010년 2월 28일까지 유효했던 연방자연보호법 제59조는 연방환경 자연보호 및 핵 안전부에 의한 환경단체 인증 절차를 규정했다.

92) 2010년 2월 28일까지 유효했던 연방자연보호법 제60조는 각 연방주에서 인증된 환경단체에 대한 조항이다.

관청에서 시작한 절차

(2) 2002년 4월 3일 이전 그 시점까지 유효했던 연방자연보호법 제29조⁹³⁾에 의거하여 시작된 행정절차는 끝까지 진행시킨다. 2010년 3월 1일 이전에 그 시점까지 유효했던 연방자연보호법 제58조⁹⁴⁾에 근거하여 시작된 행정절차는 끝까지 진행시킨다.

(3) 2002년 4월 3일 이전 그 시점까지 유효했던 연방자연보호법 제59조⁹⁵⁾ 또는 2010년 3월 1일까지 유효했던 연방자연보호법 제60조 (1)항과 (3)항에 근거하여 연방 혹은 연방 주에 의해 인정된 협회에 대해서도 제63조, 제6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93) 2002년 4월 3일까지 유효했던 연방자연보호법 제29조는 보호된 풍경부분에 관한 조항이다.

94) 2010년 2월 28일까지 유효했던 연방자연보호법 제58조는 연방환경 자연보호 및 핵 안전부에서 인증받은 환경단체의 참여에 관한 조항이다.

95) 2002년 4월 3일까지 유효했던 연방자연보호법 제59조는 연방연방환경 자연보호 및 핵 안전부의 단체인증 절차에 관한 조항이다.